(주) 한국보상원
KOREA COMPENSATION BOARD CO.,LTD

AI SEARCH · BOOK 01
2026. 11.

LAND COMPENSATION ACT · 3-COLUMN VIEW

손실보상법률 3단 편람

3단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을 한눈에

ACT · ENFORCEMENT DECREE · ENFORCEMENT RULE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조문마다 위임된 시행령 · 시행규칙을 나란히 배치하고 관련 대법원 판례를 함께 표시

248	109	139	190
수록 조문	법률 조문	시행령 · 규칙	관련 판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현행 법령 원문 기준 · 3단 비교 편집

무료 배포 · 열람·사용 자유 · 재편집 불가

KOREA COMPENSATION BOARD · SINCE 2008 · 한국보상원 EST. 2008

(주) 한국보상원
KOREA COMPENSATION BOARD CO.,LTD

손실보상·사업부지 확보 전문

2008년 이후 18년 · 누적계약 217개 사업장 · 손실보상 업무완료 184건

www.bosangwon.com · 1588-6836

이 쪽은 양면 인쇄 · 제본을 위해 비워 두었습니다.

일러두기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관련 판례 수

세 칸 읽기	한 줄 = **법률 조문 하나** + 그 조문을 근거로 하는(본문에 「법 제○조」가 적힌) **시행령 · 시행규칙 조문**. 세 칸이 같은 줄 맨 위에서 시작합니다.
쪽 나눔	한 줄은 쪽 사이에서 나누지 않아 **쪽마다 첫 줄이 새 법률 조문**으로 시작합니다. 한 쪽보다 긴 조문만 다음 쪽으로 이어지며, 맨 위 색 머리(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는 쪽마다 다시 나옵니다. 장(章)은 새 쪽에서 시작합니다.
색 표시	조문 번호 · 항(①②…) 번호는 칸 색으로, 다른 조문을 가리키는 「법 · 영 · 규칙 제○조」는 **그 법령의 색 밑줄**로, 〈개정 …〉 등 연혁은 회색 작은 글씨로 표시했습니다.
— 표시	그 법률 조문을 이어받는 시행령 · 시행규칙 조문이 없다는 뜻입니다.
판례 n	그 조문을 참조한 대법원 판례 수 — 판례 본문은 www.bosangwon.com 「손실보상 법률&판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넣지 않은 것	부칙 · 별표 · 서식. 법적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원문을 따릅니다.
인쇄 · 제본	A4 가로 · **위쪽 제본** — 쪽마다 위쪽에 제본 자리(약 2.7cm)를 비워 두었습니다. 양면 인쇄 때는 「짧은 변으로 넘기기」를 고르면 책장을 위로 넘겨 봅니다.

차례

1	**제1장 총칙**	제1조 ~ 제8조 · 10개 조문
2	**제2장 공익사업의 준비**	제9조 ~ 제13조 · 5개 조문
3	**제3장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제14조 ~ 제18조 · 5개 조문
4	**제4장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제19조 ~ 제48조 · 31개 조문
5	**제5장 토지수용위원회**	제49조 ~ 제60조의2 · 14개 조문
6	**제6장 손실보상 등**	제61조 ~ 제82조 · 24개 조문
7	**제7장 이의신청 등**	제83조 ~ 제90조 · 9개 조문
8	**제8장 환매권**	제91조 ~ 제92조 · 2개 조문
9	**제9장 벌칙**	제93조 ~ 제99조 · 9개 조문

문의 · 인쇄 책자 요청: (주)한국보상원 1588-6836 · 실무 해석은 「질의회신&판례 법령집」, 절차별 실무는 「손실보상 업무편람」 책자와 함께 보세요.

제1장 총칙

제1조 ~ 제8조 · 법률 10개 조문

법 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9. 8.] [법률 제21901호, 2026. 9. 8., 타법개정]

제1조 (목적) 판례 4

이 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2조 (정의) 판례 7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지등"이란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 ·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2. "공익사업"이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사업시행자"란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토지소유자"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소유자를 말한다.
5. "관계인"이란 사업시행자가 취득하거나 사용할 토지에 관하여 지상권 · 지역권 · 전세권 · 저당권 · 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따른 권리 또는 그 밖에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진 자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다만,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가 된 후에 권리를 취득한 자는 기존의 권리를 승계한 자를 제외하고는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6. "가격시점"이란 제67조제1항에 따른 보상액 산정(算定)의 기준이 되는 시점을 말한다.

시 행 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11. 10.] [대통령령 제36804호, 2026. 11. 10.]

제1조 (목적)

이 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 5. 28.]

—

시 행 규 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 4. 9.] [국토교통부령 제1322호, 2024. 4. 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2. 5.>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 2. 5.>

1. "대상물건"이라 함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 물건 및 권리로서 평가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말한다.
2. "공익사업시행지구"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을 말한다.
3. "지장물"이라 함은 공익사업시행지구내의 토지에 정착한 건축물 · 공작물 · 시설 · 입목 · 죽목 및 농작물 그 밖의 물건 중에서 당해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직접 필요하지 아니한 물건을 말한다.
4. "이전비"라 함은 대상물건의 유용성을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이를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지역으로 이전 · 이설 또는 이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물건의 해체비, 건축허가에 일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포함한 건축비와 적정거리까지의 운반비를 포함하며, 「건축법」 등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9. 8.] [법률 제21901호, 2026. 9. 8., 타법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11. 10.] [대통령령 제36804호, 2026. 11. 1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 4. 9.] [국토교통부령 제1322호, 2024. 4. 9.]
7. "사업인정"이란 공익사업을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 8. 4.]		관계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시설의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5.** "가격시점"이라 함은 **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시점을 말한다. **6.** "거래사례비교법"이라 함은 대상물건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다른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거래된 사정 및 시기 등에 따른 적정한 보완을 하여 비교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대상물건에 대한 가격시점 현재의 가격을 구하는 방법을 말한다. **7.** "임대사례비교법"이라 함은 대상물건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다른 물건의 임대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사용료를 구하는 방법을 말한다. **8.** "적산법"이라 함은 가격시점에서 대상물건의 가격을 기대이율로 곱한 금액에 대상물건을 계속 사용하는데 필요한 제경비를 더하여 대상물건의 사용료를 구하는 방법을 말한다. **9.** "원가법"이라 함은 가격시점에서 대상물건을 재조달하는데 소요되는 가격에서 감가수정을 하여 대상물건에 대한 가격시점 현재의 가격을 구하는 방법을 말한다.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9. 8.] [법률 제21901호, 2026. 9. 8., 타법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11. 10.] [대통령령 제36804호, 2026. 11. 1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 4. 9.] [국토교통부령 제1322호, 2024. 4. 9.]
제3조 (적용 대상)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 · 물건 및 권리를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9. 8. 27.> 1. 토지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2. 토지와 함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입목(立木), 건물, 그 밖에 토지에 정착된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3. 광업권 · 어업권 · 양식업권 또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 4. 토지에 속한 흙 · 돌 · 모래 또는 자갈에 관한 권리 [전문개정 2011. 8. 4.]	—	—
제4조 (공익사업) 판례 1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개정 2014. 3. 18., 2015. 12. 29.> 1. 국방 · 군사에 관한 사업 2.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 · 인가 · 승인 · 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 · 도로 · 공항 · 항만 · 주차장 · 공영차고지 · 화물터미널 · 궤도(軌道) · 하천 · 제방 · 댐 · 운하 · 수도 · 하수도 · 하수종말처리 · 폐수처리 · 사방(砂防) · 방풍(防風) · 방화(防火) · 방조(防潮) · 방수(防水) · 저수지 · 용수로 · 배수로 · 석유비축 · 송유 · 폐기물처리 · 전기 · 전기통신 · 방송 · 가스 및 기상 관측에 관한 사업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 · 공장 · 연구소 · 시험소 · 보건시설 · 문화시설 · 공원 · 수목원 · 광장 · 운동장 · 시장 · 묘지 · 화장장 · 도축장 또는 그 밖의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	—	—

법 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9. 8.] [법률 제21901호, 2026. 9. 8., 타법개정]	시 행 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11. 10.] [대통령령 제36804호, 2026. 11. 10.]	시 행 규 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 4. 9.] [국토교통부령 제1322호, 2024. 4. 9.]
4.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학교·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 건립에 관한 사업 5.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 건설 또는 택지 및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로, 교량, 전선로, 재료 적치장 또는 그 밖의 부속시설에 관한 사업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택, 공장 등의 이주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 [전문개정 2011. 8. 4.]		
제4조의2 (토지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특례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제4조 또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다. ② 별표는 이 법 외의 다른 법률로 개정할 수 없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제8호에 따른 사업의 공공성, 수용의 필요성 등을 5년마다 재검토하여 폐지, 변경 또는 유지 등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4. 13.> [본조신설 2015. 12. 29.]	—	—

법 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9. 8.] [법률 제21901호, 2026. 9. 8., 타법개정]	시 행 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11. 10.] [대통령령 제36804호, 2026. 11. 10.]	시 행 규 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 4. 9.] [국토교통부령 제1322호, 2024. 4. 9.]
제4조의3 (공익사업 신설 등에 대한 개선요구 등) ①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제4조제8호에 따른 사업의 신설, 변경 및 폐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심의를 거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선요구나 의견제출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개선요구 · 의견제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소속 직원 또는 관계 전문기관이나 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12. 31.]	**제2조 (개선요구 등에 관한 처리 결과의 확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라 한다)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개선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한 사항의 처리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6. 25.]	—
제5조 (권리 · 의무 등의 승계) ① 이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권리 · 의무는 그 사업을 승계한 자에게 이전한다. ② 이 법에 따라 이행한 절차와 그 밖의 행위는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승계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 [전문개정 2011. 8. 4.]	—	—
제6조 (기간의 계산방법 등) 이 법에서 기간의 계산방법은 「민법」에 따르며, 통지 및 서류의 송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3조 (통지)** 법 제6조에 따른 통지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통지는 말로 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5.> [전문개정 2013. 5. 28.]	**제3조 (송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05. 2. 5.>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9. 8.] [법률 제21901호, 2026. 9. 8., 타법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11. 10.] [대통령령 제36804호, 2026. 11. 1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 4. 9.] [국토교통부령 제1322호, 2024. 4. 9.]
	제4조 (송달) ① 법 제6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해당 서류를 송달받을 자에게 교부하거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78조부터 제183조까지, 제186조, 제191조 및 제192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서류를 송달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1. 송달받을 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송달받을 자의 주소·거소 또는 그 밖에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3. 「민사소송법」 제191조에 따를 수 없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하려는 자는 토지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이하 "행정시"라 한다)의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해당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2.>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송부된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그 서류의 사본을 해당 시(행정시를 포함한다)·군 또는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의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서류의 사본을 게시한 경우 그 게시일부터 14일이 지난 날에 해당 서류가 송달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3. 5. 28.]	

법 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9. 8.] [법률 제21901호, 2026. 9. 8., 타법개정]	시 행 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11. 10.] [대통령령 제36804호, 2026. 11. 10.]	시 행 규 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 4. 9.] [국토교통부령 제1322호, 2024. 4. 9.]
제7조 (대리인)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사업인정의 신청, 재결(裁決)의 신청, 의견서 제출 등의 행위를 할 때 변호사나 그 밖의 자를 대리인으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8. 4.]	**제5조 (대리인)** 법 제7조에 따른 대리인은 서면으로 그 권한을 증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5. 28.]	—
제8조 (서류의 발급신청) ①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발급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할 수 있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발급하는 서류에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6조 (서류의 발급신청)**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발급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3. 대상 토지등의 표시 4. 발급이 필요한 서류의 종류 및 수량 5. 서류의 사용용도 [전문개정 2013. 5. 28.]	—

제2장 공익사업의 준비

제9조 ~ 제13조 · 법률 5개 조문

법 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9. 8.] [법률 제21901호, 2026. 9. 8., 타법개정]

제9조 (사업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준비하기 위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특별자치도, 시·군 또는 자치구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측량이나 조사를 하려면 사업의 종류와 출입할 토지의 구역 및 기간을 정하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국가일 때에는 그 사업을 시행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고, 사업시행자가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일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업시행자, 사업의 종류와 출입할 토지의 구역 및 기간을 공고하고 이를 토지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제2항 본문에 따라 허가를 한 경우
2. 제2항 단서에 따라 통지를 받은 경우
3. 특별자치도, 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이나 조사를 하려는 경우

④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조사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시 행 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11. 10.] [대통령령 제36804호, 2026. 11. 10.]

제6조의2 (손실보상 재결의 신청)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재결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손실보상재결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법 제51조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이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재결의 신청인과 상대방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3. 손실 발생사실
4. 손실보상액과 그 명세
5. 협의의 경위

[전문개정 2013. 5. 28.]

시 행 규 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 4. 9.] [국토교통부령 제1322호, 2024. 4. 9.]

제66조 (손실보상재결신청서의 서식)

영 제6조의2 및 제42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재결신청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8. 4. 18.>

법 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9. 8.] [법률 제21901호, 2026. 9. 8., 타법개정]	시 행 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11. 10.] [대통령령 제36804호, 2026. 11. 10.]	시 행 규 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 4. 9.] [국토교통부령 제1322호, 2024. 4. 9.]
⑤ 제4항에 따른 손실의 보상은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1년이 지났거나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는 청구할 수 없다. ⑥ 제4항에 따른 손실의 보상은 사업시행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⑦ 제6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사업시행자나 손실을 입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1조**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이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라 한다)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8. 4.]		
제10조 (출입의 통지) ① **제9조제2항**에 따라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출입하려는 날의 5일 전까지 그 일시 및 장소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 또는 특별자치도, 시·군 또는 구가 사업시행자인 경우에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려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그 토지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토지점유자의 승낙 없이 그 주거(住居)나 경계표·담 등으로 둘러싸인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 8. 4.]	—	—

법 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9. 8.] [법률 제21901호, 2026. 9. 8., 타법개정]	시 행 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11. 10.] [대통령령 제36804호, 2026. 11. 10.]	시 행 규 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 4. 9.] [국토교통부령 제1322호, 2024. 4. 9.]
제11조 (토지점유자의 인용의무) 토지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시행자가 제10조에 따라 통지하고 출입·측량 또는 조사하는 행위를 방해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1. 8. 4.]	—	—
제12조 (장해물 제거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9조에 따라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 또는 조사를 할 때 장해물을 제거하거나 토지를 파는 행위(이하 "장해물 제거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및 점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그 소유자 및 점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사업시행자(특별자치도, 시·군 또는 구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장해물 제거등을 할 수 있으며, 특별자치도, 시·군 또는 구가 사업시행자인 경우에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허가 없이 장해물 제거등을 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하거나 장해물 제거등을 하려면 미리 그 소유자 및 점유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장해물 제거등을 하려는 자는 장해물 제거등을 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그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장해물 제거등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제9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 8. 4.]	—	—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9. 8.] [법률 제21901호, 2026. 9. 8., 타법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11. 10.] [대통령령 제36804호, 2026. 11. 1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 4. 9.] [국토교통부령 제1322호, 2024. 4. 9.]
제13조 (증표 등의 휴대) ①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고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려는 사람과 제12조에 따라 장해물 제거등을 하려는 사람(특별자치도, 시·군 또는 구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은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증을 지녀야 한다. ② 제9조제2항 단서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고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려는 사람과 사업시행자가 특별자치도, 시·군 또는 구인 경우로서 제9조제3항제3호 또는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장해물 제거등을 하려는 사람은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녀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증표 및 허가증은 토지 또는 장해물의 소유자 및 점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이를 보여주어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증표 및 허가증의 서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8. 4.]	—	**제4조 (증표 및 허가증의 서식)** 법 제13조제4항(법 제27조제1항 및 제58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증은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3장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제14조 ~ 제18조 · 법률 5개 조문

법 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9. 8.] [법률 제21901호, 2026. 9. 8., 타법개정]

제14조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판례 2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 전에 협의에 의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이 필요할 때에는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하고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해당 토지조서와 물건조서에 그 사유를 적어야 한다.

1.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는 경우
2.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거소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② 토지와 물건의 소재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등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기재사항과 그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시 행 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11. 10.] [대통령령 제36804호, 2026. 11. 10.]

제7조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등의 작성)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계획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대상 물건인 토지를 표시한 용지도(用地圖)와 토지등에 관한 공부(公簿)의 조사 결과 및 현장조사 결과를 적은 기본조사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15. 6. 1., 2021. 11. 23.>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용지도와 기본조사서를 기본으로 하여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토지조서(이하 "토지조서"라 한다) 및 물건조서(이하 "물건조서"라 한다)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1. 11. 23.>

③ 토지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토지의 소재지·지번·지목·전체면적 및 편입면적과 현실적인 이용상황
2. 토지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3.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와 그 권리의 종류 및 내용
4. 작성일
5. 그 밖에 토지에 관한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사항

④ 물건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 8. 26.>

1. 물건(광업권·어업권·양식업권 또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토지의 소재지 및 지번
2. 물건의 종류·구조·규격 및 수량
3. 물건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4.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와 그 권리의 종류 및 내용

시 행 규 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 4. 9.] [국토교통부령 제1322호, 2024. 4. 9.]

제5조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서식)

영 제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는 각각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9. 8.] [법률 제21901호, 2026. 9. 8., 타법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11. 10.] [대통령령 제36804호, 2026. 11. 1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 4. 9.] [국토교통부령 제1322호, 2024. 4. 9.]
	5. 작성일 **6.** 그 밖에 물건에 관한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사항 ⑤ 물건조서를 작성할 때 그 물건이 건축물인 경우에는 제4항 각 호의 사항 외에 건축물의 연면적과 편입면적을 적고, 그 실측평면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실측한 편입면적이 건축물대장에 첨부된 건축물현황도에 따른 편입면적과 일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물현황도로 실측평면도를 갈음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기본조사서의 작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1. 11. 23.> ⑦ 토지조서와 물건조서의 서식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11. 23.> [전문개정 2013. 5. 28.]	
제15조 (보상계획의 열람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14조에 따라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공익사업의 개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과 보상의 시기·방법 및 절차 등이 포함된 보상계획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하며, 제2항 단서에 따라 열람을 의뢰하는 사업시행자를 제외하고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이 20인 이하인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공고나 통지를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지역이 둘 이상의 시·군 또는 구에 걸쳐 있거나 사업시행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도지사,	**제28조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법인등 추천)**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상계획을 공고할 때에는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하며, 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을 추천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하고, 보상 대상 토지가 소재하는 시·도의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6. 8. 31., 2021. 11. 23.> ②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23.> ③ 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1. 11. 23.>	**제17조 (재평가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보상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그 평가가 관계법령에 위반하여 평가되었거나 합리적 근거 없이 비교 대상이 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와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등 부당하게 평가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감정평가법인등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다시 평가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필요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보상평가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해당 평가가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3. 4. 25., 2022. 1. 21.> ②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에게 대상물건의 평가를 다시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06. 3. 17., 2007. 4. 12., 2013. 4. 25., 2022. 1. 21.>

법 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9. 8.] [법률 제21901호, 2026. 9. 8., 타법개정]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도 그 사본을 송부하여 열람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고되거나 통지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異議)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제16조에 따른 협의가 완료되기 전까지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④ 사업시행자는 해당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에 제3항에 따라 제기된 이의를 부기(附記)하고 그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시 행 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11. 10.] [대통령령 제36804호, 2026. 11. 10.]

1. 감정평가 수행능력,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 감정평가 실적, 징계 여부 등을 고려하여 추천대상 집단을 선정할 것
2. 추천대상 집단 중에서 추첨 등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할 것
3. 제1호의 추천대상 집단 및 추천 과정을 이해당사자에게 공개할 것
4. 보상 대상 토지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계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할 것

④ 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려는 토지소유자는 보상 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 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해야 한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법인등 1인에 대해서만 동의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23.>

⑤ 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려는 토지소유자는 해당 시·도지사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 8. 31., 2021. 11. 23.>

⑥ 제4항 전단에 따라 보상 대상 토지면적과 토지소유자 총수를 계산할 때 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 추천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국유지 또는 공유지는 보상 대상 토지면적과 토지소유자 총수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9. 6. 25., 2021. 11. 23.>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시·도지사의 감정평가법인등 추천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표준지침을 작성하여 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5., 2021. 11. 23.>

[전문개정 2013. 5. 28.][제목개정 2021. 11. 23.]

시 행 규 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 4. 9.] [국토교통부령 제1322호, 2024. 4. 9.]

1. 제1항 전단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당해 감정평가법인등에게 평가를 요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대상물건의 평가액 중 최고평가액이 최저평가액의 1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대상물건이 지장물인 경우 최고평가액과 최저평가액의 비교는 소유자별로 지장물 전체 평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3. 평가를 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보상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재평가를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종전의 평가가 영 제28조에 따라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추천한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보상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토지소유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영 제28조에 따라 다른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여 줄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추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천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7. 4. 12., 2013. 4. 25., 2022. 1. 21.>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를 행한 경우 보상액의 산정은 각 감정평가법인등이 다시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2. 1. 21.>

⑤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평가내역 및 당해 감정평가법인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당해 감정평가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법하게 행하여졌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3., 2022. 1. 21.>

제18조 (평가방법 적용의 원칙)

① 대상물건의 평가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되, 그 방법으로 구한 가격 또는 사용료(이하 "가격등"이라 한다)를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9. 8.] [법률 제21901호, 2026. 9. 8., 타법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11. 10.] [대통령령 제36804호, 2026. 11. 1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 4. 9.] [국토교통부령 제1322호, 2024. 4. 9.]
		다른 방법으로 구한 가격등과 비교하여 그 합리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가 크게 부적정하게 될 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다른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평가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대상물건에 대하여는 이 규칙의 취지와 감정평가의 일반이론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평가하여야 한다. **제19조 (대상물건의 변경에 따른 평가)** ① 공익사업의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추가되는 대상물건이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평가한 물건과 그 실체 및 이용상태 등이 동일하고 가격등에 변경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따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이미 평가한 물건의 평가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보상액을 산정할 수 있다. ② 공익사업의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대상물건의 일부가 보상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없이 그 대상물건의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미 보상계약이 체결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변경하고 그에 따른 보상액의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하는 경우로서 재평가시점에서 물건의 수량 또는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제20조 (구분평가 등)** ① 취득할 토지에 건축물·입목·공작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와 그 건축물등을 각각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등이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9. 8.] [법률 제21901호, 2026. 9. 8., 타법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11. 10.] [대통령령 제36804호, 2026. 11. 1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 4. 9.] [국토교통부령 제1322호, 2024. 4. 9.]
		토지와 함께 거래되는 사례나 관행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등과 토지를 일괄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보상평가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건축물등의 면적 또는 규모의 산정은 「건축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 2. 5.>
		제44조 (어업권의 평가 등) 판례 1 ①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어업권이 제한·정지 또는 취소되거나 「수산업법」 제14조 또는 「내수면어업법」 제13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의 연장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어업권 및 어선·어구 또는 시설물에 대한 손실의 평가는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10에 따른다. <개정 2005. 2. 5., 2008. 4. 18., 2012. 1. 2., 2024. 4. 9.> ②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어업권이 취소되거나 「수산업법」 제14조 또는 「내수면어업법」 제13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의 연장이 허가되지 않는 경우로서 다른 어장에 시설을 이전하여 어업이 가능한 경우 해당 어업권에 대한 손실의 평가는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10 중 어업권이 정지된 경우의 손실액 산출방법 및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5. 2. 5., 2008. 4. 18., 2012. 1. 2., 2024. 4. 9.> ③ 법 제1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보상계획의 공고(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한 보상계획의 통지를 말한다) 또는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날(이하 "사업인정고시일등"이라 한다) 이후에 어업권의 면허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허가어업 및 신고어업(「내수면어업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어업을 제외한다)에 대한 손실의 평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5. 2. 5.>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9. 8.] [법률 제21901호, 2026. 9. 8., 타법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11. 10.] [대통령령 제36804호, 2026. 11. 1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 4. 9.] [국토교통부령 제1322호, 2024. 4. 9.]
		⑤ 제52조는 이 조의 어업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7. 4. 12.>
제16조 (협의) 판례 1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8조 (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16조에 따른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상협의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제2항에 따른 공고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1. 협의기간·협의장소 및 협의방법 2. 보상의 시기·방법·절차 및 금액 3.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공고는 사업시행자가 공고할 서류를 토지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에게 송부하여 해당 시(행정시를 포함한다)·군 또는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와 사업시행자의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6. 1. 6.>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협의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④ 법 제17조에 따라 체결되는 계약의 내용에는 계약의 해지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과 이에 따르는 보상액의 환수 및 원상복구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사업시행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협의기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협의경위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제6조 (보상협의요청서 및 협의경위서의 서식)** ① 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협의요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② 영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경위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 **제7조** 삭제 <2008. 4. 18.>

법 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9. 8.] [법률 제21901호, 2026. 9. 8., 타법개정]	시 행 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11. 10.] [대통령령 제36804호, 2026. 11. 10.]	시 행 규 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 4. 9.] [국토교통부령 제1322호, 2024. 4. 9.]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거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 · 거소,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서명 또는 날인을 받지 아니하되, 해당 협의경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1.** 협의의 일시 · 장소 및 방법 **2.** 대상 토지의 소재지 · 지번 · 지목 및 면적과 토지에 있는 물건의 종류 · 구조 및 수량 **3.**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4.**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구체적인 주장내용과 이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의견 **5.** 그 밖에 협의와 관련된 사항 [전문개정 2013. 5. 28.] **제9조** 삭제 <2008. 4. 17.>	
제17조 (계약의 체결) 판례 2 사업시행자는 제16조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었을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	—
제18조 삭제 <2007. 10. 17.>	—	**제46조 (영업의 폐업에 대한 손실의 평가 등)** ①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폐업하는 경우의 영업손실은 2년간의 영업이익(개인영업인 경우에는 소득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영업용 고정자산 · 원재료 · 제품 및 상품 등의 매각손실액을 더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개정 2024. 4. 9.> ② 제1항에 따른 폐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07. 4. 12., 2008. 4. 18., 2024. 4. 9.>

법 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9. 8.] [법률 제21901호, 2026. 9. 8., 타법개정]

시 행 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11. 10.] [대통령령 제36804호, 2026. 11. 10.]

시 행 규 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 4. 9.] [국토교통부령 제1322호, 2024. 4. 9.]

1. 영업장소 또는 배후지(당해 영업의 고객이 소재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당해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인접하고 있는 시·군·구의 지역안의 다른 장소에 이전하여서는 당해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2. 당해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 또는 인접하고 있는 시·군·구의 지역안의 다른 장소에서는 당해 영업의 허가등을 받을 수 없는 경우
3. 도축장 등 악취 등이 심하여 인근주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영업시설로서 해당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 또는 인접하고 있는 시·군·구의 지역안의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영업이익은 해당 영업의 최근 3년간(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영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연도를 제외한다)의 평균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평가하되,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 또는 고시됨으로 인하여 영업이익이 감소된 경우에는 해당 공고 또는 고시일전 3년간의 평균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개인영업으로서 최근 3년간의 평균 영업이익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영업이익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연간 영업이익을 최근 3년간의 평균 영업이익으로 본다. <개정 2005. 2. 5., 2008. 4. 18., 2021. 8. 27.> 연간 영업이익=「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승인을 받아 작성·공표한 제조부문 보통인부의 임금단가×25(일)× 12(월)

④ 제2항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는 영업자가 폐업 후 2년 이내에 해당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 또는 인접하고 있는 시·군·구의 지역 안에서 동일한 영업을 하는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9. 8.] [법률 제21901호, 2026. 9. 8., 타법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11. 10.] [대통령령 제36804호, 2026. 11. 1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 4. 9.] [국토교통부령 제1322호, 2024. 4. 9.]
		경우에는 폐업에 대한 보상금을 환수하고 제47조에 따른 영업의 휴업 등에 대한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 <신설 2007. 4. 12., 2024. 4. 9.> ⑤ 제45조제1호 단서에 따른 임차인의 영업에 대한 보상액 중 영업용 고정자산 · 원재료 · 제품 및 상품 등의 매각손실액을 제외한 금액은 제1항에 불구하고 1천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신설 2007. 4. 12., 2008. 4. 18.> [제목개정 2024. 4. 9.]
		제47조 (영업의 휴업 등에 대한 손실의 평가) 판례 1 ①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장소를 이전하여야 하는 경우의 영업손실은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과 영업장소 이전 후 발생하는 영업이익감소액에 다음 각호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개정 2014. 10. 22.> 1. 휴업기간중의 영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 유지관리비와 휴업기간중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하여야 하는 최소인원에 대한 인건비 등 고정적 비용 2. 영업시설 · 원재료 · 제품 및 상품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 3. 이전광고비 및 개업비 등 영업장소를 이전함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부대비용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업기간은 4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제 휴업기간으로 하되, 그 휴업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4. 10. 22.> 1. 당해 공익사업을 위한 영업의 금지 또는 제한으로 인하여 4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2. 영업시설의 규모가 크거나 이전에 고도의 정밀성을 요구하는 등 당해 영업의 고유한 특수성으로 인하여 4개월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9. 8.] [법률 제21901호, 2026. 9. 8., 타법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11. 10.] [대통령령 제36804호, 2026. 11. 1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 4. 9.] [국토교통부령 제1322호, 2024. 4. 9.]
		이내에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③ 공익사업에 영업시설의 일부가 편입됨으로 인하여 잔여시설에 그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잔여시설을 보수하지 아니하고는 그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의 영업손실 및 영업규모의 축소에 따른 영업손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보상액은 제1항에 따른 평가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07. 4. 12.> 1. 해당 시설의 설치 등에 소요되는 기간의 영업이익 2. 해당 시설의 설치 등에 통상 소요되는 비용 3. 영업규모의 축소에 따른 영업용 고정자산 · 원재료 · 제품 및 상품 등의 매각손실액 ④ 영업을 휴업하지 아니하고 임시영업소를 설치하여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의 영업손실은 임시영업소의 설치비용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보상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⑤ 제46조제3항 전단은 이 조에 따른 영업이익의 평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개인영업으로서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이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 · 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3인 가구의 휴업기간 동안의 가계지출비(휴업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개월분의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가계지출비를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으로 본다. <개정 2007. 4. 12., 2008. 4. 18., 2014. 10. 22.> ⑥ 제45조제1호 단서에 따른 임차인의 영업에 대한 보상액 중 제1항제2호의 비용을 제외한 금액은 제1항에 불구하고 1천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신설 2007. 4. 12., 2008. 4. 18.>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9. 8.] [법률 제21901호, 2026. 9. 8., 타법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11. 10.] [대통령령 제36804호, 2026. 11. 1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 4. 9.] [국토교통부령 제1322호, 2024. 4. 9.]
		⑦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영업장소 이전 후 발생하는 영업이익 감소액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제5항 후단에 따른 개인영업의 경우에는 가계지출비를 말한다)의 100분의 20으로 하되, 그 금액은 1천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신설 2014. 10. 22.>

제4장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제19조 ~ 제48조 · 법률 31개 조문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9. 8.] [법률 제21901호, 2026. 9. 8., 타법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11. 10.] [대통령령 제36804호, 2026. 11. 1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 4. 9.] [국토교통부령 제1322호, 2024. 4. 9.]

제1절 수용 또는 사용의 절차

제19조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 공익사업에 수용되거나 사용되고 있는 토지등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다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 8. 4.]

—

—

제20조 (사업인정) 판례 5

① 사업시행자는 제19조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8. 4.]

제10조 (사업인정의 신청)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이하 "사업인정"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인정신청서(이하 "사업인정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국가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시행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사업인정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3. 사업예정지
4. 사업인정을 신청하는 사유

제8조 (사업인정신청서의 서식 등)

① 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② 영 제1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사업의 개요 및 법적 근거
2. 사업의 착수·완공예정일
3. 소요경비와 재원조서
4. 사업에 필요한 토지와 물건의 세목
5. 사업의 필요성 및 그 효과

③ 영 제10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면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사업예정지를 표시하는 도면 : 축척 5천분의 1 내지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에 사업예정지를 담홍색으로 착색할 것

법 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9. 8.] [법률 제21901호, 2026. 9. 8., 타법개정]

시 행 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11. 10.] [대통령령 제36804호, 2026. 11. 10.]

② 사업인정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5.>

1. 사업계획서
2. 사업예정지 및 사업계획을 표시한 도면
3. 사업예정지 안에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토지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등에 관한 조서·도면 및 해당 토지등의 관리자의 의견서
4. 사업예정지 안에 있는 토지의 이용이 다른 법령에 따라 제한된 경우에는 해당 법령의 시행에 관하여 권한 있는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서
5. 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면허 또는 인가, 그 밖의 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처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서
6.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과의 협의내용을 적은 서류(협의를 한 경우로 한정한다)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토지 외의 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경우에는 해당 물건 또는 권리가 소재하는 토지의 세목을 말한다)을 적은 서류
8. 해당 공익사업의 공공성, 수용의 필요성 등에 대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사업시행자의 의견서

[전문개정 2013. 5. 28.]

시 행 규 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 4. 9.] [국토교통부령 제1322호, 2024. 4. 9.]

2. 사업계획을 표시하는 도면 : 축척 1백분의 1 내지 5천분의 1의 지도에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물의 위치를 명시하고 그 시설물에 대한 평면도를 첨부할 것

④ **영 제10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에 관한 조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여 이를 작성하고, 동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에 관한 도면은 축척 1백분의 1 내지 1천2백분의 1의 지도에 토지등(**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위치를 표시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⑤ **영 제10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기재한 서류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⑥ 사업시행자는 **영 제1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사업인정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도면을 제출하는 때에는 정본 1통과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포함된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 또는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 이하 **제10조제3항** 및 **제11조제3항**에서 같다)의 수의 합계에 3을 더한 부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4. 18.>

제9조 (수수료)

① **법 제20조제2항**·**제28조제2항**·**제29조제2항** 및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법 제28조제1항**·**제29조제1항** 및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신청 및 협의성립확인신청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하는 경우에 한한다)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 11. 29., 2008. 3. 14., 2013. 3. 23.>

법 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9. 8.] [법률 제21901호, 2026. 9. 8., 타법개정]

제21조 (협의 및 의견청취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인정을 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사업인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2. 29., 2018. 12. 31.>

②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 공익사업의 허가·인가·승인권자 등은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지구지정·사업계획승인 등을 하려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인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15. 12. 29., 2018. 12. 31.>

③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사업인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 이행 여부, 허가·인가·승인대상 사업의 공공성, 수용의 필요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29., 2018. 12. 31.>

④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제3항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현지조사를 의뢰하거나 그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31.>

⑤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한 차례만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31.>

시 행 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11. 10.] [대통령령 제36804호, 2026. 11. 10.]

제11조 (의견청취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사업인정에 관한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17.>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 공익사업의 허가·인가·승인권자 등은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사업인정신청서(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 공익사업의 경우에는 허가·인가·승인 등 신청서를 말한다) 및 관계 서류의 사본을 토지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송부(전자문서에 의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17.>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송부된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정시를 포함한다)·군 또는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의 게시판에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그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3. 사업예정지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공고를 한 경우에는 그 공고의 내용과 의견이 있으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시 행 규 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 4. 9.] [국토교통부령 제1322호, 2024. 4. 9.]

제9조의2 (협의의 요청)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 공익사업의 허가·인가·승인권자 등은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라 한다)와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영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
2. 영 제10조제2항 각 호의 서류 및 도면
3. 영 제11조제6항에 따라 송부 또는 통지받은 토지소유자, 관계인 및 그 밖에 사업인정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견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작성과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정한다.

[본조신설 2019. 7. 1.]

제9조의3 (재협의 요청)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 공익사업의 허가·인가·승인권자 등은 법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사업인정 등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여 다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협의에 대해서는 법 제21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9. 7. 1.]

법 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9. 8.] [법률 제21901호, 2026. 9. 8., 타법개정]

⑥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제3항의 사항을 검토한 결과 자료 등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허가·인가·승인권자에게 14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제5항의 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8. 12. 31., 2020. 6. 9.>

⑦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 12. 31.>

⑧ 그 밖에 제1항 또는 제2항의 협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 12. 31.>

[전문개정 2011. 8. 4.][제목개정 2018. 12. 31.]

시 행 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11. 10.] [대통령령 제36804호, 2026. 11. 10.]

있다는 뜻을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주소·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그 밖에 사업인정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3항에 따른 열람기간에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나면 제5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서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 공익사업의 허가·인가·승인권자 등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제출된 의견서가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통지(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17.>

[전문개정 2013. 5. 28.]

제11조의2 (검토사항)

법 제2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해당 공익사업이 근거 법률의 목적, 상위 계획 및 시행 절차 등에 부합하는지 여부
2. 사업시행자의 재원 및 해당 공익사업의 근거 법률에 따른 법적 지위 확보 등 사업수행능력 여부

[본조신설 2019. 6. 25.]

시 행 규 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 4. 9.] [국토교통부령 제1322호, 2024. 4. 9.]

제9조의4 (협의 후 자료 제출 요청)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 공익사업의 허가·인가·승인권자 등에게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협의를 완료한 지구지정·사업계획승인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지구지정·사업계획승인 등의 여부
2. 협의 조건의 이행여부
3. 해당 공익사업에 대한 재결 신청현황

[본조신설 2019. 7. 1.]

법 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9. 8.] [법률 제21901호, 2026. 9. 8., 타법개정]	시 행 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11. 10.] [대통령령 제36804호, 2026. 11. 10.]	시 행 규 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 4. 9.] [국토교통부령 제1322호, 2024. 4. 9.]
제22조 (사업인정의 고시) 판례 2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지하고 사업시행자의 성명이나 명칭, 사업의 종류, 사업지역 및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인정의 사실을 통지받은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관계 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사업인정은 제1항에 따라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11조의3 (사업인정의 통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사업인정을 통지하는 경우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의 협의 결과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의견서를 함께 통지해야 한다. ② 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 공익사업의 허가·인가·승인권자 등은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지구지정·사업계획승인 등을 할 때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의 협의 결과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의견서를 함께 통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 6. 25.]	—
제23조 (사업인정의 실효) ① 사업시행자가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이하 "사업인정고시"라 한다)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28조제1항에 따른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사업인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인정이 실효됨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제9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 8. 4.]	—	—
제24조 (사업의 폐지 및 변경) 판례 1 ①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거나 변경함으로 인하여 토지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지체 없이	—	—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9. 8.] [법률 제21901호, 2026. 9. 8., 타법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11. 10.] [대통령령 제36804호, 2026. 11. 1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 4. 9.] [국토교통부령 제1322호, 2024. 4. 9.]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폐지되거나 변경된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사업시행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거나 변경함으로 인하여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을 알았을 때에는 미리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듣고 제2항에 따른 고시를 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고시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⑤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 사업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폐지되거나 변경된 내용이 고시·공고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1. 8. 10.> 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고시가 된 날부터 그 고시된 내용에 따라 사업인정의 전부 또는 일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2021. 8. 10.> ⑦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변경함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0.> ⑧ 제7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제9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 8. 10.> [전문개정 2011. 8. 4.]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9. 8.] [법률 제21901호, 2026. 9. 8., 타법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11. 10.] [대통령령 제36804호, 2026. 11. 1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 4. 9.] [국토교통부령 제1322호, 2024. 4. 9.]
제24조의2 (사업의 완료) ① 사업이 완료된 경우 사업시행자는 지체 없이 사업시행자의 성명이나 명칭, 사업의 종류, 사업지역, 사업인정고시일 및 취득한 토지의 세목을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사업시행자의 성명이나 명칭, 사업의 종류, 사업지역 및 사업인정고시일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사업이 완료된 것을 알았을 때에는 미리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듣고 제2항에 따른 고시를 하여야 한다. ④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 사업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의 준공·완료·사용개시 등이 고시·공고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1. 8. 10.]	—	—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9. 8.] [법률 제21901호, 2026. 9. 8., 타법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11. 10.] [대통령령 제36804호, 2026. 11. 1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 4. 9.] [국토교통부령 제1322호, 2024. 4. 9.]
제25조 (토지등의 보전) ①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에는 누구든지 고시된 토지에 대하여 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형질의 변경이나 제3조제2호 또는 제4호에 규정된 물건을 손괴하거나 수거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②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에 고시된 토지에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공작물(工作物)의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附加)·증치(增置)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미리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2항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증치를 한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해당 건축물·공작물 또는 물건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손실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 8. 4.]	—	—

법 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9. 8.] [법률 제21901호, 2026. 9. 8., 타법개정]	시 행 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11. 10.] [대통령령 제36804호, 2026. 11. 10.]	시 행 규 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 4. 9.] [국토교통부령 제1322호, 2024. 4. 9.]
제26조 (협의 등 절차의 준용) 판례 4 ①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보상계획의 공고·통지 및 열람, 보상액의 산정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의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68조를 준용한다. ② 사업인정 이전에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68조에 따른 절차를 거쳤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고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으로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변동이 없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사업시행자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제16조에 따른 협의를 요구할 때에는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	—
제27조 (토지 및 물건에 관한 조사권 등) ① 사업인정의 고시가 된 후에는 사업시행자 또는 제68조에 따라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또는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 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토지나 물건에 출입하여 측량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해당 토지나 물건에 출입하려는 날의 5일 전까지 그 일시 및 장소를 토지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19., 2018. 12. 31., 2020. 4. 7.> 1. 사업시행자가 사업의 준비나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토지등의 감정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

법 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9. 8.] [법률 제21901호, 2026. 9. 8., 타법개정]	시 행 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11. 10.] [대통령령 제36804호, 2026. 11. 10.]	시 행 규 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 4. 9.] [국토교통부령 제1322호, 2024. 4. 9.]
② 제1항에 따른 출입·측량·조사에 관하여는 제10조제3항, 제11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8. 12. 31.> ③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에는 제26조제1항에서 준용되는 제15조제3항에 따라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6조제1항에서 준용되는 제14조에 따라 작성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이 진실과 다르다는 것을 입증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2. 31.> ④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조사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감정평가법인등이 제1항제2호에 따른 감정평가를 위하여 측량·조사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포함한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2020. 4. 7.> ⑤ 제4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제9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 12. 31.> [전문개정 2011. 8. 4.]		
제28조 (재결의 신청) 판례 4 ① 제26조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른 협의 요구가 없을 때를 포함한다)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결을 신청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8. 4.]	**제12조 (재결의 신청)**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28조제1항 및 제30조제2항에 따라 재결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재결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5.> 1.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사업인정의 근거 및 고시일 3.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물건의 경우에는 물건의 소재지·지번·종류·구조 및 수량)	**제10조 (재결신청서의 서식 등)** ① 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8조제2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은 영 제12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 사업예정지 및 사업계획을 표시한 도면의 작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영 제12조제1항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결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도면을 제출하는 때에는 정본 1통과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포함된 시·군 또는 구의 수의 합계에 해당하는 부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9. 8.] [법률 제21901호, 2026. 9. 8., 타법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11. 10.] [대통령령 제36804호, 2026. 11. 1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 4. 9.] [국토교통부령 제1322호, 2024. 4. 9.]
	4.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에 물건이 있는 경우에는 물건의 소재지 · 지번 · 종류 · 구조 및 수량 5. 토지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용의 방법 및 기간 6.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7. 보상액 및 그 명세 8.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예정일 9. 청구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와 청구일(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재결을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0.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의 협의 결과 11.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협의가 성립된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토지의 소재지 · 지번 · 지목 · 면적 및 보상금 내역 나. 물건의 소재지 · 지번 · 종류 · 구조 · 수량 및 보상금 내역 ② 제1항의 재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5., 2024. 4. 9.> 1. 제7조제1항에 따른 기본조사서 2. 토지조서 또는 물건조서 3. 협의경위서 4. 사업계획서 5. 사업예정지 및 사업계획을 표시한 도면 6. 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의견서 ③ 사업시행자는 법 제63조제7항에 따라 보상금을 채권으로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서류 및 도면 외에 채권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채권으로 보상하는 보상금의 금액	

법 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9. 8.] [법률 제21901호, 2026. 9. 8., 타법개정]

시 행 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11. 10.] [대통령령 제36804호, 2026. 11. 10.]

2. 채권원금의 상환방법 및 상환기일

3. 채권의 이자율과 이자의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전문개정 2013. 5. 28.]

제15조 (재결신청서의 열람 등)

①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재결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그 신청서 및 관계 서류의 사본을 토지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송부하여 공고 및 열람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송부된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재결신청 내용을 시(행정시를 포함한다)·군 또는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의 게시판에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그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긴급한 사정으로 공고 및 열람 의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고하지 못하거나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지 못하는 경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직접 재결신청 내용을 공고(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관보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하고, 재결신청서와 관계 서류의 사본을 일반인이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24., 2019. 6. 25.>

③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공고를 한 경우에는 그 공고의 내용과 의견이 있으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뜻을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주소·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12. 24.>

시 행 규 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 4. 9.] [국토교통부령 제1322호, 2024. 4. 9.]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9. 8.] [법률 제21901호, 2026. 9. 8., 타법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11. 10.] [대통령령 제36804호, 2026. 11. 1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 4. 9.] [국토교통부령 제1322호, 2024. 4. 9.]
	④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에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24.>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 본문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나면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서를 지체 없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하며, 제출된 의견서가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24.> ⑥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지난 후 제출된 의견서를 수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 5. 28.]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9. 8.] [법률 제21901호, 2026. 9. 8., 타법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11. 10.] [대통령령 제36804호, 2026. 11. 1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 4. 9.] [국토교통부령 제1322호, 2024. 4. 9.]
제29조 (협의 성립의 확인) ①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간에 제26조에 따른 절차를 거쳐 협의가 성립되었을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제28조제1항에 따른 재결 신청기간 이내에 해당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협의 성립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 성립의 확인에 관하여는 제28조제2항, 제31조, 제32조, 제34조, 제35조, 제52조제7항, 제53조제5항, 제57조 및 제5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3. 4. 18.> ③ 사업시행자가 협의가 성립된 토지의 소재지 · 지번 · 지목 및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을 받아 제1항에 따른 협의 성립의 확인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협의 성립이 확인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확인은 이 법에 따른 재결로 보며,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그 확인된 협의의 성립이나 내용을 다툴 수 없다. [전문개정 2011. 8. 4.]	**제13조 (협의 성립 확인의 신청)**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협의 성립의 확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협의성립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협의가 성립된 토지의 소재지 · 지번 · 지목 및 면적 2. 협의가 성립된 물건의 소재지 · 지번 · 종류 · 구조 및 수량 3. 토지 또는 물건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방법 및 기간 4. 토지 또는 물건의 소유자 및 관계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5. 협의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소멸되는 권리의 내용과 그 권리의 취득 또는 소멸의 시기 6. 보상액 및 그 지급일 ② 제1항의 협의성립확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동의서 2. 계약서 3.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4. 사업계획서 ③ 법 제2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3. 5. 28.]	**제11조 (협의성립확인신청서의 서식 등)** ① 영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성립확인신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8조제2항의 규정은 영 제13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의 작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영 제13조제1항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성립확인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를 제출하는 때에는 정본 1통과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포함된 시 · 군 또는 구의 수의 합계에 해당하는 부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성립확인신청의 경우에는 사본은 제출하지 아니한다.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9. 8.] [법률 제21901호, 2026. 9. 8., 타법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11. 10.] [대통령령 제36804호, 2026. 11. 1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 4. 9.] [국토교통부령 제1322호, 2024. 4. 9.]
제30조 (재결 신청의 청구) 판례 3 ①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수료에 관하여는 **제28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사업시행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을 넘겨서 재결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그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보상금에 가산(加算)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14조 (재결 신청의 청구 등)** 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재결신청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협의기간이 지난 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재결신청청구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2.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3.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4. 대상 토지의 소재지 · 지번 · 지목 및 면적과 토지에 있는 물건의 종류 · 구조 및 수량 5.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유 ②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서에 적어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보상금과 함께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5. 28.]	**제12조 (재결신청청구서의 제출방법)**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재결신청청구서의 제출은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증명취급의 방법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 12. 11.]

법 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9. 8.] [법률 제21901호, 2026. 9. 8., 타법개정]	시 행 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11. 10.] [대통령령 제36804호, 2026. 11. 10.]	시 행 규 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 4. 9.] [국토교통부령 제1322호, 2024. 4. 9.]
제31조 (열람) ①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이하 "토지수용위원회"라 한다)는 제28조제1항에 따라 재결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관계 서류의 사본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토지수용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하였을 때에는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 중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8. 4.]	—	—
제32조 (심리) ① 토지수용위원회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지났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신청에 대한 조사 및 심리를 하여야 한다. ② 토지수용위원회는 심리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출석시켜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③ 토지수용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미리 그 심리의 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	—

법 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9. 8.] [법률 제21901호, 2026. 9. 8., 타법개정]	시 행 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11. 10.] [대통령령 제36804호, 2026. 11. 10.]	시 행 규 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 4. 9.] [국토교통부령 제1322호, 2024. 4. 9.]
제33조 (화해의 권고) ① 토지수용위원회는 그 재결이 있기 전에는 그 위원 3명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로 하여금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화해를 권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위원회에서 선임한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밖에 그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화해가 성립되었을 때에는 해당 토지수용위원회는 화해조서를 작성하여 화해에 참여한 위원,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화해조서에 서명 또는 날인이 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화해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 8. 4.]	**제16조 (소위원회의 구성)**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는 국토교통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는 특별시 · 광역시 · 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 · 도"라 한다)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1명씩 포함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3. 5. 28.]	—
제34조 (재결) 판례 5 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서면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결서에는 주문 및 그 이유와 재결일을 적고, 위원장 및 회의에 참석한 위원이 기명날인한 후 그 정본(正本)을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	—
제35조 (재결기간) 토지수용위원회는 제32조에 따른 심리를 시작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재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14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8. 4.]	—	—

법 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9. 8.] [법률 제21901호, 2026. 9. 8., 타법개정]	시 행 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11. 10.] [대통령령 제36804호, 2026. 11. 10.]	시 행 규 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 4. 9.] [국토교통부령 제1322호, 2024. 4. 9.]
제36조 (재결의 경정) ① 재결에 계산상 또는 기재상의 잘못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할 때에는 토지수용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정재결(更正裁決)을 할 수 있다. ② 경정재결은 원재결서(原裁決書)의 원본과 정본에 부기하여야 한다. 다만, 정본에 부기할 수 없을 때에는 경정재결의 정본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	—
제37조 (재결의 유탈) 토지수용위원회가 신청의 일부에 대한 재결을 빠뜨린 경우에 그 빠뜨린 부분의 신청은 계속하여 그 토지수용위원회에 계속(係屬)된다. [전문개정 2011. 8. 4.]	—	—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9. 8.] [법률 제21901호, 2026. 9. 8., 타법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11. 10.] [대통령령 제36804호, 2026. 11. 1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 4. 9.] [국토교통부령 제1322호, 2024. 4. 9.]
제38조 (천재지변 시의 토지의 사용) ①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변(事變)으로 인하여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공익사업을 긴급히 시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즉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국가일 때에는 그 사업을 시행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업시행자가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일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각각 통지하고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가 특별자치도, 시·군 또는 구일 때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허가나 통지 없이 사용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하거나 통지를 받은 경우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 단서에 따라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즉시 토지소유자 및 토지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토지의 사용기간은 6개월을 넘지 못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제9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18조 (사용의 허가와 통지)**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토지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용하려는 토지의 구역과 사용의 방법 및 기간을 정하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법 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3. 5. 28.]	—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9. 8.] [법률 제21901호, 2026. 9. 8., 타법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11. 10.] [대통령령 제36804호, 2026. 11. 1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 4. 9.] [국토교통부령 제1322호, 2024. 4. 9.]
제39조 (시급한 토지 사용에 대한 허가) ① 제28조에 따른 재결신청을 받은 토지수용위원회는 그 재결을 기다려서는 재해를 방지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공공의 이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한 후 즉시 해당 토지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토지의 사용기간은 6개월을 넘지 못한다. ③ 토지수용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제38조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19조 (담보의 제공)**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담보의 제공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공탁(供託)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공탁하였을 때에는 공탁서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5. 28.]	—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9. 8.] [법률 제21901호, 2026. 9. 8., 타법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11. 10.] [대통령령 제36804호, 2026. 11. 1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 4. 9.] [국토교통부령 제1322호, 2024. 4. 9.]

제2절 수용 또는 사용의 효과

제40조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판례 6

① 사업시행자는 제38조 또는 제39조에 따른 사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써 결정한 수용 또는 사용을 시작하는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토지등의 소재지의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供託)할 수 있다.

1.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을 때
2. 사업시행자의 과실 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을 때
3.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불복할 때
4. 압류나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이 금지되었을 때

③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권리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권리를 승계한 자가 제1항에 따른 보상금 또는 제2항에 따른 공탁금을 받는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2항제3호의 경우 보상금을 받을 자에게 자기가 산정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그 금액과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과의 차액(差額)을 공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을 받을 자는 그 불복의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공탁된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 8. 4.]

제20조 (보상금의 공탁)

①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공탁을 채권으로 하는 경우 그 금액은 법 제63조제7항에 따라 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는 금액으로 한다.

② 사업시행자가 국가인 경우에는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보상채권(이하 "보상채권"이라 한다)을 제34조제2항에 따른 보상채권취급기관으로부터 교부받아 공탁한다. 이 경우 보상채권의 발행일은 사업시행자가 제34조제2항에 따른 보상채권취급기관으로부터 보상채권을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하며, 보상채권을 교부받은 날부터 보상채권 발행일의 전날까지의 이자는 현금으로 공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5. 28.]

제21조 (권리를 승계한 자의 보상금 수령)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보상금(공탁된 경우에는 공탁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는 자는 보상금을 받을 권리를 승계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시행자(공탁된 경우에는 공탁공무원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5. 28.]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9. 8.] [법률 제21901호, 2026. 9. 8., 타법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11. 10.] [대통령령 제36804호, 2026. 11. 1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 4. 9.] [국토교통부령 제1322호, 2024. 4. 9.]
제41조 (시급한 토지 사용에 대한 보상) ① 제39조에 따라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있기 전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청구할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자기가 산정한 보상금을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은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시기까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제39조에 따라 제공된 담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22조 (담보의 취득과 반환)** ①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담보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확인을 한 경우에는 확인서를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확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 및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기일 내에 손실을 보상하지 아니한 사실 3. 취득할 담보의 금액 4. 제19조제2항에 따른 공탁서의 공탁번호 및 공탁일 ④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손실을 보상한 후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제공한 담보를 반환받으려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3. 5. 28.]	—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9. 8.] [법률 제21901호, 2026. 9. 8., 타법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11. 10.] [대통령령 제36804호, 2026. 11. 1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 4. 9.] [국토교통부령 제1322호, 2024. 4. 9.]
제42조 (재결의 실효) 판례 2 ① 사업시행자가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효력을 상실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재결의 효력이 상실됨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제9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 8. 4.]	—	—
제43조 (토지 또는 물건의 인도 등) 판례 11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	—

법 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9. 8.] [법률 제21901호, 2026. 9. 8., 타법개정]	시 행 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11. 10.] [대통령령 제36804호, 2026. 11. 10.]	시 행 규 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 4. 9.] [국토교통부령 제1322호, 2024. 4. 9.]
제44조 (인도 또는 이전의 대행) 판례 1 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청구에 의하여 토지나 물건의 인도 또는 이전을 대행하여야 한다. 1. 토지나 물건을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할 자가 고의나 과실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 2. 사업시행자가 과실 없이 토지나 물건을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를 알 수 없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토지나 물건의 인도 또는 이전을 대행하는 경우 그로 인한 비용은 그 의무자가 부담한다. [전문개정 2011. 8. 4.]	—	—
제45조 (권리의 취득·소멸 및 제한) 판례 5 ①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사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사용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사용 기간 중에는 행사하지 못한다. ③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 인정된 권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멸되거나 그 행사가 정지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 8. 4.]	—	—

법 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9. 8.] [법률 제21901호, 2026. 9. 8., 타법개정]	시 행 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11. 10.] [대통령령 제36804호, 2026. 11. 10.]	시 행 규 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 4. 9.] [국토교통부령 제1322호, 2024. 4. 9.]
제46조 (위험부담)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있은 후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물건이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고의나 과실 없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그로 인한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전문개정 2011. 8. 4.]	—	—
제47조 (담보물권과 보상금) 담보물권의 목적물이 수용되거나 사용된 경우 그 담보물권은 그 목적물의 수용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받을 보상금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그 보상금이 채무자에게 지급되기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	—
제48조 (반환 및 원상회복의 의무) ① 사업시행자는 토지나 물건의 사용기간이 끝났을 때나 사업의 폐지·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토지나 물건을 그 토지나 물건의 소유자 또는 그 승계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가 원상회복을 청구하면 미리 그 손실을 보상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토지를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	—

제5장 토지수용위원회

제49조 ~ 제60조의2 · 법률 14개 조문

법 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9. 8.] [법률 제21901호, 2026. 9. 8., 타법개정]	시 행 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11. 10.] [대통령령 제36804호, 2026. 11. 10.]	시 행 규 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 4. 9.] [국토교통부령 제1322호, 2024. 4. 9.]
제49조 (설치) 토지등의 수용과 사용에 관한 재결을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두고, 특별시 · 광역시 · 도 · 특별자치도(이하 "시 · 도"라 한다)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8. 4.]	**제17조 (화해조서의 송달)** 법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이하 "토지수용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화해가 성립된 경우에는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화해조서의 정본을 사업시행자 ·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5. 28.]	—
제50조 (재결사항) 판례 3 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구역 및 사용방법 2. 손실보상 3.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과 기간 4.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 ② 토지수용위원회는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신청한 범위에서 재결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 손실보상의 경우에는 증액재결(增額裁決)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8. 4.]	—	—

법 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9. 8.] [법률 제21901호, 2026. 9. 8., 타법개정]	시 행 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11. 10.] [대통령령 제36804호, 2026. 11. 10.]	시 행 규 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 4. 9.] [국토교통부령 제1322호, 2024. 4. 9.]
제51조 (관할) ①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재결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1. 국가 또는 시·도가 사업시행자인 사업 2.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사업 ② 제49조에 따른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이하 "지방토지수용위원회"라 한다)는 제1항 각 호 외의 사업의 재결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전문개정 2011. 8. 4.]	—	—
제52조 (중앙토지수용위원회) 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의 위원은 상임(常任)으로 한다. ②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 3. 23.> ③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상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13. 3. 23.> 1.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 15년 이상 재직하였던 사람 2. 대학에서 법률학 또는 행정학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하였던 사람	—	—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9. 8.] [법률 제21901호, 2026. 9. 8., 타법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11. 10.] [대통령령 제36804호, 2026. 11. 1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 4. 9.] [국토교통부령 제1322호, 2024. 4. 9.]
3. 행정기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2년 이상 재직하였던 사람 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비상임위원은 토지 수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13. 3. 23.> ⑥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 및 상임위원 1명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위원 7명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장 및 상임위원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⑦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회의는 제6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둔다. ⑨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상임위원의 계급 등과 사무기구의 조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8. 4.]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9. 8.] [법률 제21901호, 2026. 9. 8., 타법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11. 10.] [대통령령 제36804호, 2026. 11. 1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 4. 9.] [국토교통부령 제1322호, 2024. 4. 9.]
제53조 (지방토지수용위원회) ①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 6. 1.> ②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장은 시·도지사가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은 시·도지사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하여 토지 수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12. 6. 1.> ④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위원 8명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2. 6. 1., 2018. 12. 31.> ⑤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회의는 제4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2. 6. 1.> ⑥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관하여는 **제52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 6. 1.> [전문개정 2011. 8. 4.]	—	—

법 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9. 8.] [법률 제21901호, 2026. 9. 8., 타법개정]	시 행 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11. 10.] [대통령령 제36804호, 2026. 11. 10.]	시 행 규 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 4. 9.] [국토교통부령 제1322호, 2024. 4. 9.]
제54조 (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5. 12. 29.>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당연히 퇴직한다. [전문개정 2011. 8. 4.]	—	—
제55조 (임기) 토지수용위원회의 상임위원 및 위촉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
제56조 (신분 보장) 위촉위원은 해당 토지수용위원회의 의결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임 중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해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전문개정 2011. 8. 4.]	—	—

법 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9. 8.] [법률 제21901호, 2026. 9. 8., 타법개정]	시 행 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11. 10.] [대통령령 제36804호, 2026. 11. 10.]	시 행 규 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 4. 9.] [국토교통부령 제1322호, 2024. 4. 9.]
제57조 (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① 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토지수용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1.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 2.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배우자 · 친족 또는 대리인 3.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임원 또는 그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 ②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리 ·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어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피 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리 · 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④ 사건의 심리 · 의결에 관한 사무에 관여하는 위원 아닌 직원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 8. 4.]	—	—
제57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7. 3. 21.]	—	—

법 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9. 8.] [법률 제21901호, 2026. 9. 8., 타법개정]	시 행 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11. 10.] [대통령령 제36804호, 2026. 11. 10.]	시 행 규 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 4. 9.] [국토교통부령 제1322호, 2024. 4. 9.]
제58조 (심리조사상의 권한) ① 토지수용위원회는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 4. 7.> 1.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관계인 또는 참고인에게 토지수용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게 하거나 그 의견서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 2. 감정평가법인등이나 그 밖의 감정인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하거나 토지수용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게 하는 것 3. 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 또는 제52조제8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직원이나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하여금 실지조사를 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위원 또는 직원이 실지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제13조를 준용한다. ③ 토지수용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참고인 또는 감정평가법인등이나 그 밖의 감정인에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일당, 여비 및 감정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0. 4. 7.> [전문개정 2011. 8. 4.]	**제23조 (출석요구 등의 방법)** 법 제5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출석 또는 자료제출 등의 요구는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송달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5. 28.] **제24조 (운영 및 심의방법 등)** ① 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수용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 및 서기 몇 명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간사 및 서기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경우에는 시·도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당 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심의안건에 대해서는 위원 중에서 전담위원을 지정하여 예비심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토지수용위원회의 운영·문서처리·심의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는 토지수용위원회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 5. 28.]	**제13조 (참고인 등의 일당·여비 및 감정수수료)** 법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참고인과 감정인에 대한 일당·여비 및 감정수수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정한다. 다만,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에 대한 감정수수료는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고한 수수료와 실비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05. 2. 5., 2008. 3. 14., 2013. 3. 23., 2016. 8. 31., 2022. 1. 21.>
제59조 (위원 등의 수당 및 여비) 토지수용위원회는 위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8. 4.]	—	**제14조 (위원의 수당 및 여비)**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수당 및 여비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이를 정한다.

법 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9. 8.] [법률 제21901호, 2026. 9. 8., 타법개정]	시 행 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11. 10.] [대통령령 제36804호, 2026. 11. 10.]	시 행 규 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 4. 9.] [국토교통부령 제1322호, 2024. 4. 9.]
제60조 (운영세칙) 토지수용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8. 4.]	—	—
제60조의2 (재결정보체계의 구축 · 운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 · 도지사와 협의하여 토지등의 수용과 사용에 관한 재결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관련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재결정보체계를 구축 · 운영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결정보체계의 구축 · 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관리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재결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3. 21.]	**제24조의2 (재결정보체계 구축 · 운영 업무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0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재결정보체계의 구축 ·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8.> 1.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2.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재결정보체계의 개발 · 관리 및 보안 2. 재결정보체계와 관련된 컴퓨터 · 통신설비 등의 설치 및 관리 3. 재결정보체계와 관련된 정보의 수집 및 관리 4. 재결정보체계와 관련된 통계의 생산 및 관리 5. 재결정보체계의 운영을 위한 사용자교육 6. 그 밖에 재결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업무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6. 20.]	**제14조의2 (업무의 지도 · 감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0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재결정보체계의 구축 ·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 ·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위탁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보완하거나 변경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위탁업무 수행의 적절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6. 20.]

제6장 손실보상 등

제61조 ~ 제82조 · 법률 24개 조문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9. 8.] [법률 제21901호, 2026. 9. 8., 타법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11. 10.] [대통령령 제36804호, 2026. 11. 1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 4. 9.] [국토교통부령 제1322호, 2024. 4. 9.]

제1절 손실보상의 원칙

제61조 (사업시행자 보상) 판례 7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

—

제62조 (사전보상) 판례 5

사업시행자는 해당 공익사업을 위한 공사에 착수하기 이전에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에게 보상액 전액(全額)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른 천재지변 시의 토지 사용과 제39조에 따른 시급한 토지 사용의 경우 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 8. 4.]

—

—

제63조 (현금보상 등)

① 손실보상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로서 사업시행자가 해당 공익사업의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과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토지로 보상이 가능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받을 보상금 중 본문에 따른 현금 또는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채권으로 보상받는 금액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22. 2. 3.>

제24조의3 (토지로 보상받을 수 있는 자)

법 제63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에서 "토지의 보유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날의 1년 전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토지를 소유한 자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2. 5. 9.]

제25조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

법 제63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 고시된

제15조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거주사실 등에 대한 입증방법)

① 영 제26조제3항제2호에 따른 거주사실의 입증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05. 2. 5., 2008. 4. 18., 2009. 11. 13., 2020. 12. 11.>

1. 「주민등록법」 제2조에 따라 해당 지역의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읍 · 면 · 동장 또는 출장소장의 확인을 받아 입증하는 방법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로 입증하는 방법
   가. 공공요금영수증

법 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9. 8.] [법률 제21901호, 2026. 9. 8., 타법개정]

1. 토지로 보상받을 수 있는 자: 토지의 보유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대지의 분할 제한 면적 이상의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자(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날 당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종사하는 자 및 종사하였던 날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가 된다. 이 경우 대상자가 경합(競合)할 때에는 제7항제2호에 따른 부재부동산(不在不動産) 소유자가 아닌 자 중 해당 공익사업지구 내 거주하는 자로서 토지 보유기간이 오래된 자 순으로 토지로 보상하며, 그 밖의 우선순위 및 대상자 결정방법 등은 사업시행자가 정하여 공고한다.
   가. 국토교통부
   나. 사업시행자
   다. 제21조제2항에 따라 협의하거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공익사업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하는 기관
   라.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기 전에 관계 법령에 따라 실시한 협의, 의견청취 등의 대상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2. 보상하는 토지가격의 산정 기준금액: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 분양가격으로 한다.
3. 보상기준 등의 공고: 제15조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할 때에 토지로 보상하는 기준을 포함하여 공고하거나 토지로 보상하는 기준을 따로 일간신문에 공고할 것이라는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토지소유자에게 토지로 보상하는 면적은 사업시행자가 그 공익사업의 토지이용계획과 사업계획

시 행 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11. 10.] [대통령령 제36804호, 2026. 11. 10.]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0. 9. 10.>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3.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4.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5.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6.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7.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전기통신공사
8.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9.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10.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
1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1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13.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14.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1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문개정 2013. 5. 28.]

제26조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

① 법 제63조제7항제2호에 따른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는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지역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이 소유하는 토지로 한다. <개정 2013. 12. 24.>

시 행 규 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 4. 9.] [국토교통부령 제1322호, 2024. 4. 9.]

   나.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또는 고용보험료 납입증명서
   다. 전화사용료, 케이블텔레비전 수신료 또는 인터넷 사용료 납부확인서
   라. 신용카드 대중교통 이용명세서
   마. 자녀의 재학증명서
   바. 연말정산 등 납세 자료
   사. 그 밖에 실제 거주사실을 증명하는 객관적 자료

② 영 제26조제3항제3호에 따른 사실상 영업행위의 입증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모두 제출하는 방법에 의한다. <신설 2009. 11. 13., 2012. 1. 2., 2015. 4. 28.>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및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면허·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허가등을 받았음을 입증하는 서류
2. 해당 영업에 따른 납세증명서 또는 공공요금영수증 등 객관성이 있는 자료

[제목개정 2020. 12. 11.]

제15조의2 (사업시행자의 현금보상으로의 전환)

법 제63조제5항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해당 사업계획의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12. 1. 2., 2013. 3. 23.>

[본조신설 2008. 4. 18.]

제15조의3 (토지소유자의 현금보상으로의 전환)

법 제63조제6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 1. 2., 2013. 3. 23.>

1. 토지소유자의 채무변제를 위하여 현금보상이 부득이한 경우

법 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9. 8.] [법률 제21901호, 2026. 9. 8., 타법개정]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그 보상면적은 주택용지는 990제곱미터, 상업용지는 1천1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토지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제4항에 따라 현금으로 보상받을 권리를 포함한다)는 그 보상계약의 체결일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 전매(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 및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거나 해당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시행자는 토지로 보상하기로 한 보상금을 현금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금보상액에 대한 이자율은 제9항제1호가목에 따른 이자율의 2분의 1로 한다. <개정 2020. 4. 7., 2022. 2. 3., 2026. 6. 16.>

1. 제93조, 제96조 및 제97조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2. 「농지법」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제60조의2 및 제61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3. 「산지관리법」 제53조, 제54조제1호 · 제2호 · 제3호의2 · 제4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55조제1호 · 제2호 ·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4.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제1항 및 제58조제1항제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5.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28조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④ 제1항 단서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토지로 보상받기로 한 경우 그 보상계약 체결일부터 1년이 지나면 이를 현금으로 전환하여 보상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현금보상액에 대한 이자율은 제9항제2호가목에 따른 이자율로 한다.

시 행 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11. 10.] [대통령령 제36804호, 2026. 11. 10.]

1. 해당 토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읍 · 면(도농복합형태인 시의 읍 · 면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 · 구 · 읍 · 면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지역으로서 해당 토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지역에 주민등록을 하였으나 해당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이 소유하는 토지는 제1항에 따른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질병으로 인한 요양
2. 징집으로 인한 입영
3. 공무(公務)
4. 취학(就學)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1.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토지
2.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고 있음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하는 사람이 소유하는 토지
3.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지역에서 사실상 영업하고 있음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하는 사람이 해당 영업을 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토지

[전문개정 2013. 5. 28.]

시 행 규 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 4. 9.] [국토교통부령 제1322호, 2024. 4. 9.]

2. 그 밖에 부상이나 질병의 치료 등을 위하여 현금보상이 부득이하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08. 4. 18.]

제21조 (보상채권의교부및상환현황통지서 등의 서식)

① 영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채권의교부및상환현황통지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② 영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채권지급결정통지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

③ 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채권교부대장은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

제22조 (취득하는 토지의 평가)

① 취득하는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평가대상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② 토지에 건축물등이 있는 때에는 그 건축물등이 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토지를 평가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표준지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토지로 한다. <신설 2013. 4. 25.>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제38조의2 및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에서 정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등 공법상 제한이 같거나 유사할 것
2. 평가대상 토지와 실제 이용상황이 같거나 유사할 것
3. 평가대상 토지와 주위 환경 등이 같거나 유사할 것
4. 평가대상 토지와 지리적으로 가까울 것

법 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9. 8.] [법률 제21901호, 2026. 9. 8., 타법개정]

⑤ 사업시행자는 해당 사업계획의 변경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보상하기로 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토지로 보상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보상할 수 있다. 이 경우 현금보상액에 대한 이자율은 제9항제2호가목에 따른 이자율로 한다. <개정 2013. 3. 23.>

⑥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토지로 보상받기로 한 보상금에 대하여 현금보상을 요청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금보상액에 대한 이자율은 제9항제2호가목에 따른 이자율로 한다. <개정 2013. 3. 23.>

1.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처분 또는 강제집행을 받는 경우
2.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려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⑦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 고시된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시행자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원하는 경우
2.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보상하는 경우

⑧ 토지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 고시된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는

시 행 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11. 10.] [대통령령 제36804호, 2026. 11. 10.]

제27조 (채권보상의 기준이 되는 보상금액 등)

① 법 제63조제7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 및 법 제63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억원 이상의 일정 금액"이란 1억원을 말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또는 토지가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양도소득세(양도소득세에 부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주민세와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 경우 납부하여야 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상당 금액을 세무사의 확인을 받아 현금으로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할 때에는 양도소득세 상당 금액을 제1항의 금액에 더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5. 28.]

제27조의2 (토지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서의 채권보상)

① 법 제63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9. 6. 25.>

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이 속한 시(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 군 또는 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 · 군 또는 구

② 법 제63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 고시된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시 행 규 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 4. 9.] [국토교통부령 제1322호, 2024. 4. 9.]

제23조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평가)

①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에 대하여는 제한받는 상태대로 평가한다. 다만, 그 공법상 제한이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에는 제한이 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한다.

②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 등이 변경된 토지에 대하여는 변경되기 전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제24조 (무허가건축물 등의 부지 또는 불법형질변경된 토지의 평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한 건축물(이하 "무허가건축물등"이라 한다)의 부지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형질변경을 하여야 하는 토지를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형질변경한 토지(이하 "불법형질변경토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무허가건축물등이 건축 또는 용도변경될 당시 또는 토지가 형질변경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한다. <개정 2005. 2. 5., 2012. 1. 2.>

제25조 (미지급용지의 평가)

①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이하 이 조에서 "미지급용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한다. 다만,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편입될 당시의 지목과 인근토지의 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다. <개정 2015. 4. 28.>

법 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9. 8.] [법률 제21901호, 2026. 9. 8., 타법개정]

제7항에도 불구하고 제7항제2호에 따른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보상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억원 이상의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시행자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3. 그 밖에 대규모 개발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⑨ 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채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채권의 상환 기한은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하여야 하며, 그 이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7항제2호 및 제8항에 따라 부재부동산 소유자에게 채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가. 상환기한이 3년 이하인 채권: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채권발행일 전달의 이자율로서,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이자율을 평균한 이자율로 한다)
   나. 상환기한이 3년 초과 5년 이하인 채권: 5년 만기 국고채 금리(채권발행일 전달의 국고채 평균 유통금리로 한다)
2.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아닌 자가 원하여 채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가. 상환기한이 3년 이하인 채권: 3년 만기 국고채 금리(채권발행일 전달의 국고채 평균 유통금리로 한다)로 하되, 제1호가목에 따른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이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보다 높은 경우에는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한다.
   나. 상환기한이 3년 초과 5년 이하인 채권: 5년 만기 국고채 금리(채권발행일 전달의 국고채 평균 유통금리로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시 행 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11. 10.] [대통령령 제36804호, 2026. 11. 10.]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③ 법 제63조제8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 4. 29., 2015. 12. 28.>

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
2.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조성사업
3.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4.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5.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전문개정 2013. 5. 28.]

제32조 (보상채권의 이자율 및 상환)

① 보상채권의 이자율은 법 제63조제9항에 따른 이자율로 한다.

② 보상채권의 원리금은 상환일에 일시 상환한다.

③ 보상채권의 발행일부터 상환일 전날까지의 이자는 1년 단위의 복리로 계산한다.

④ 제35조제1항에 따른 보상채권지급결정통지서의 발급일부터 보상채권 발행일 전날까지의 보상채권으로 지급할 보상금에 대한 이자는 제1항에 따른 보상채권의 이자율과 같은 이자율로 산정한 금액을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을 지급할 때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3. 5. 28.]

시 행 규 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 4. 9.] [국토교통부령 제1322호, 2024. 4. 9.]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지급용지의 평가를 의뢰하는 때에는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평가의뢰서에 미지급용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4. 28.>

[제목개정 2015. 4. 28.]

제26조 (도로 및 구거부지의 평가)

① 도로부지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 2. 5.>

1. 「사도법」에 의한 사도의 부지는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5분의 1 이내
2. 사실상의 사도의 부지는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3분의 1 이내
3. 제1호 또는 제2호외의 도로의 부지는 제22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

② 제1항제2호에서 "사실상의 사도"라 함은 「사도법」에 의한 사도외의 도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군관리계획에 의하여 도로로 결정된 후부터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05. 2. 5., 2012. 1. 2., 2012. 4. 13.>

1. 도로개설당시의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로
2. 토지소유자가 그 의사에 의하여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
3. 「건축법」 제45조에 따라 건축허가권자가 그 위치를 지정·공고한 도로
4. 도로개설당시의 토지소유자가 대지 또는 공장용지 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치한 도로

법 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9. 8.] [법률 제21901호, 2026. 9. 8., 타법개정]

시 행 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11. 10.] [대통령령 제36804호, 2026. 11. 10.]

제33조 (보상채권의 기재사항)

보상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명칭
2. 번호
3. 제3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전문개정 2013. 5. 28.]

제34조 (보상채권의 취급기관 등)

① 보상채권의 교부 및 상환에 관한 업무는 한국은행의 주된 사무소·지사무소 및 대리점이 이를 취급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한국은행의 주된 사무소·지사무소 및 대리점 중 해당 보상채권의 교부 및 상환 업무를 취급할 기관(이하 "보상채권취급기관"이라 한다)을 미리 지정하고, 보상채권취급기관에 사업시행자의 인감조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 보상채권취급기관은 보상채권을 교부할 때에는 그 보상채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해당 업무의 책임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발행일 및 상환일
2. 교부일
3. 보상채권취급기관의 명칭

④ 한국은행 총재는 매월 20일까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상채권의 교부 및 상환 현황 통지서를 기획예산처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0.>

[전문개정 2013. 5. 28.]

시 행 규 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 4. 9.] [국토교통부령 제1322호, 2024. 4. 9.]

③ 구거부지에 대하여는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3분의 1 이내로 평가한다. 다만, 용수를 위한 도수로부지(개설당시의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수로부지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서 "인근토지"라 함은 당해 도로부지 또는 구거부지가 도로 또는 구거로 이용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예상되는 표준적인 이용상황과 유사한 토지로서 당해 토지와 위치상 가까운 토지를 말한다.

제27조 (개간비의 평가 등)

① 국유지 또는 공유지를 관계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간(매립 및 간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자가 개간당시부터 보상당시까지 계속하여 적법하게 당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개간한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개간한 자가 사망한 때부터 계속하여 적법하게 당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간에 소요된 비용(이하 "개간비"라 한다)은 이를 평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액은 개간후의 토지가격에서 개간전의 토지가격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07. 4. 1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간비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개간전과 개간후의 토지의 지세·지질·비옥도·이용상황 및 개간의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간비를 보상하는 경우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액은 개간후의 토지가격에서 개간비를 뺀 금액으로 한다.

제28조 (토지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의 평가)

① 취득하는 토지에 설정된 소유권외의 권리에 대하여는 당해 권리의 종류, 존속기간 및 기대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 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9. 8.] [법률 제21901호, 2026. 9. 8., 타법개정]

시 행 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11. 10.] [대통령령 제36804호, 2026. 11. 10.]

제35조 (보상채권의 사무취급절차 등)

① 사업시행자는 보상채권으로 보상하려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상채권지급결정통지서를 발급하고, 보상채권취급기관에 이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보상채권취급기관은 제1항에 따라 보상채권지급결정통지서를 발급받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해당 보상채권취급결정통지서를 제출하면 보상채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5. 28.]

제36조 (보상채권교부대장의 비치 · 송부)

보상채권취급기관은 보상채권을 교부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상채권교부대장을 2부 작성하여 1부는 비치하고, 나머지 1부는 다음 달 7일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5. 28.]

시 행 규 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 4. 9.] [국토교통부령 제1322호, 2024. 4. 9.]

평가한다. 이 경우 점유는 권리로 보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에 대하여는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하여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되, 일반적으로 양도성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권리의 유무에 따른 토지의 가격차액 또는 권리설정계약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제29조 (소유권외의 권리의 목적이 되고 있는 토지의 평가)

취득하는 토지에 설정된 소유권외의 권리의 목적이 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당해 권리가 없는 것으로 하여 제22조 내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에서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소유권외의 권리의 가액을 뺀 금액으로 평가한다.

제30조 (토지의 사용에 대한 평가)

토지의 사용료는 임대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적정한 임대사례가 없거나 대상토지의 특성으로 보아 임대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산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제31조 (토지의 지하 · 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

①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공간을 사실상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공간에 대한 사용료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당해 토지의 가격에 당해 공간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토지의 이용이 저해되는 정도에 따른 적정한 비율(이하 이 조에서 "입체이용저해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②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공간을 일정한 기간동안 사용하는 경우 당해 공간에 대한 사용료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9. 8.] [법률 제21901호, 2026. 9. 8., 타법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11. 10.] [대통령령 제36804호, 2026. 11. 1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 4. 9.] [국토교통부령 제1322호, 2024. 4. 9.]
		산정한 당해 토지의 사용료에 입체이용저해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제32조 (잔여지의 손실 등에 대한 평가)** ①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하락된 경우의 잔여지의 손실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기 전의 잔여지의 가격(당해 토지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되기 전의 가격을 말한다)에서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후의 잔여지의 가격을 뺀 금액으로 평가한다. ②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 또는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에 통로·구거·담장 등의 신설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의 손실은 그 시설의 설치나 공사에 필요한 비용으로 평가한다. ③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됨으로 인하여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잔여지에 대하여는 그 일단의 토지의 전체가격에서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토지의 가격을 뺀 금액으로 평가한다. **제33조 (건축물의 평가)** 판례 14 ① 건축물(담장 및 우물 등의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그 구조·이용상태·면적·내구연한·유용성 및 이전가능성 그 밖에 가격형성에 관련되는 제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다. ② 건축물의 가격은 원가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에 있어서는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주택입주권 등을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주는 경우 또는

법 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9. 8.] [법률 제21901호, 2026. 9. 8., 타법개정]	시 행 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11. 10.] [대통령령 제36804호, 2026. 11. 10.]	시 행 규 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 4. 9.] [국토교통부령 제1322호, 2024. 4. 9.]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이전이 허용되는 경우에 있어서의 당해 사유로 인한 가격상승분은 제외하고 평가한 금액을 말한다)이 원가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보다 큰 경우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의 가격은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한다. <개정 2005. 2. 5.> ③ 건축물의 사용료는 임대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임대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산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④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한 건축물의 철거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가 당해 건축물의 구성부분을 사용 또는 처분할 목적으로 철거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부담한다. **제65조 (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경작하고 있는 농지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이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됨으로 인하여 당해지역(영 제26조제1항 각호의 1의 지역을 말한다)에서 영농을 계속할 수 없게 된 농민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시행지구밖에서 그가 경작하고 있는 농지에 대하여도 제48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영농손실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제64조 (개인별 보상) 손실보상은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게 개인별로 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별로 보상액을 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 8. 4.]	—	—

법 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9. 8.] [법률 제21901호, 2026. 9. 8., 타법개정]	시 행 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11. 10.] [대통령령 제36804호, 2026. 11. 10.]	시 행 규 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 4. 9.] [국토교통부령 제1322호, 2024. 4. 9.]
제65조 (일괄보상)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사업지역에 보상시기를 달리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등이 여러 개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요구할 때에는 한꺼번에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	—
제66조 (사업시행 이익과의 상계금지)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一團)의 토지의 일부를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잔여지(殘餘地)의 가격이 증가하거나 그 밖의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 이익을 그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한 손실과 상계(相計)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 8. 4.]	—	—
제67조 (보상액의 가격시점 등) ① 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 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② 보상액을 산정할 경우에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등의 가격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 8. 4.]	—	—
제68조 (보상액의 산정) ①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등 3인(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을 선정하여 토지등의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	**제16조 (보상평가의 의뢰 및 평가 등)**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대상물건에 대한 평가를 의뢰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보상평가의뢰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감정평가법인등에게 평가를 의뢰해야 한다. <개정 2022. 1. 21., 2024. 4. 9.> 1. 대상물건의 표시

법 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9. 8.] [법률 제21901호, 2026. 9. 8.,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보상액을 산정할 수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6. 1., 2013. 3. 23., 2020. 4. 7.>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할 때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을 각 1인씩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추천된 감정평가법인등을 포함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1., 2020. 4. 7.>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 의뢰의 절차 및 방법, 보상액의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8. 4.]

시 행 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11. 10.] [대통령령 제36804호, 2026. 11. 10.]

시 행 규 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 4. 9.] [국토교통부령 제1322호, 2024. 4. 9.]

2. 대상물건의 가격시점

3. 평가서 제출기한

4. 대상물건의 취득 또는 사용의 구분

5. 건축물등 물건에 대하여는 그 이전 또는 취득의 구분

6.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경우에는 폐업 또는 휴업의 구분

7. 법 제8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액 평가를 위한 사전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평가조건 및 참고사항

②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서 제출기한은 3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물건이나 평가내용이 특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감정평가법인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를 의뢰받은 때에는 대상물건 및 그 주변의 상황을 현지조사하고 평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자기가 직접 평가할 수 없는 대상물건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의 승낙을 얻어 전문기관의 자문 또는 용역을 거쳐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22. 1. 21.>

④ 감정평가법인등은 평가를 한 후 별지 제16호서식의 보상평가서(이하 "보상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심사자(감정평가업에 종사하는 감정평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인 이상의 심사를 받고 보상평가서에 당해 심사자의 서명날인을 받은 후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제출기한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21.>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성실하게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4. 25.>

1. 보상평가서의 위산·오기 여부

2. 법 제70조제1항 및 제76조제1항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상물건이 적정하게 평가되었는지 여부

법 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9. 8.] [법률 제21901호, 2026. 9. 8., 타법개정]	시 행 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11. 10.] [대통령령 제36804호, 2026. 11. 10.]	시 행 규 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 4. 9.] [국토교통부령 제1322호, 2024. 4. 9.]
		3. 비교 대상이 되는 표준지의 적정성 등 대상물건에 대한 평가액의 타당성 ⑥ 보상액의 산정은 각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2. 1. 21.>
제69조 (보상채권의 발행) ① 국가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공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철도의 건설사업, 「항만법」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제63조제7항에 따라 채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회계의 부담으로 보상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8. 3. 13., 2020. 1. 29.> 1. 일반회계 2. 교통시설특별회계 ② 보상채권은 제1항 각 호의 회계를 관리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으로 기획예산처장관이 발행한다. <개정 2025. 10. 1.> ③ 기획예산처장관은 보상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회계별로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④ 보상채권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지급함으로써 발행한다. ⑤ 보상채권은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⑥ 보상채권의 발행방법, 이자율의 결정방법, 상환방법, 그 밖에 보상채권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보상채권의 발행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9조 (보상채권의 발행대상사업)** 법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7. 3. 29., 2022. 6. 14.> 1. 「댐건설 · 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댐건설사업 2. 「수도법」에 따른 수도사업 3.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공항건설사업 4.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개발사업 [전문개정 2013. 5. 28.] **제30조 (보상채권의 발행절차)** ① 법 제69조제1항 각 호의 회계를 관리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보상채권의 발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상채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그 발행을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0.> 1. 발행한도액 2. 발행요청액 3. 액면금액의 종류 4. 이자율 5. 원리금 상환의 방법 및 시기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법 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9. 8.] [법률 제21901호, 2026. 9. 8., 타법개정]	시 행 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11. 10.] [대통령령 제36804호, 2026. 11. 10.]	시 행 규 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 4. 9.] [국토교통부령 제1322호, 2024. 4. 9.]
[전문개정 2011. 8. 4.]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보상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한국은행 총재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0.> [전문개정 2013. 5. 28.] **제31조 (보상채권의 발행방법 등)** ① 보상채권은 무기명증권(無記名證券)으로 발행한다. ② 보상채권은 액면금액으로 발행하되, 최소액면금액은 10만원으로 하며, 보상금 중 10만원 미만인 끝수의 금액은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을 지급할 때 현금으로 지급한다. ③ 보상채권의 발행일은 **제35조제1항**에 따른 보상채권지급결정통지서를 발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한다. ④ 보상채권은 멸실 또는 도난 등의 사유로 분실한 경우에도 재발행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3. 5. 28.]	
제2절 손실보상의 종류와 기준 등		
제70조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① 협의나 재결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보상하되, 그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관계 법령에 따른 그 토지의 이용계획,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지가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라 산정된 비율을 말한다)과 그 밖에 그 토지의	**제37조 (지가변동률)** ①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가변동률"이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발표하는 지가변동률로서 평가대상 토지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하여 해당 평가대상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이하 "비교표준지"라 한다)가 소재하는 시(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 또는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용도지역별 지가변동률을 말한다. 다만, 비교표준지와 같은 용도지역의	—

법 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9. 8.] [법률 제21901호, 2026. 9. 8., 타법개정]

위치·형상·환경·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19.>

②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가격시점에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일시적인 이용상황과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갖는 주관적 가치 및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경우 등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③ 사업인정 전 협의에 의한 취득의 경우에 제1항에 따른 공시지가는 해당 토지의 가격시점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가격시점과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로 한다.

④ 사업인정 후의 취득의 경우에 제1항에 따른 공시지가는 사업인정고시일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로서, 해당 토지에 관한 협의의 성립 또는 재결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그 사업인정고시일과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로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되거나 고시됨으로 인하여 취득하여야 할 토지의 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시지가는 해당 공고일 또는 고시일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로서 그 토지의 가격시점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그 공익사업의 공고일 또는 고시일과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로 한다.

⑥ 취득하는 토지와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 및 평가방법은 투자비용, 예상수익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8. 4.]

시 행 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11. 10.] [대통령령 제36804호, 2026. 11. 10.]

지가변동률이 조사·발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교표준지와 유사한 용도지역의 지가변동률, 비교표준지와 이용상황이 같은 토지의 지가변동률 또는 해당 시·군 또는 구의 평균지가변동률 중 어느 하나의 지가변동률을 말한다. <개정 2019. 6. 25.>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비교표준지가 소재하는 시·군 또는 구의 지가가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변동된 경우에는 해당 공익사업과 관계없는 인근 시·군 또는 구의 지가변동률을 적용한다. 다만, 비교표준지가 소재하는 시·군 또는 구의 지가변동률이 인근 시·군 또는 구의 지가변동률보다 작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 본문에 따른 비교표준지가 소재하는 시·군 또는 구의 지가가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변동된 경우는 도로, 철도 또는 하천 관련 사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3. 12. 24.>

1. 해당 공익사업의 면적이 20만 제곱미터 이상일 것
2. 비교표준지가 소재하는 시·군 또는 구의 사업인정고시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지가변동률이 3퍼센트 이상일 것. 다만, 해당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되거나 고시됨으로 인하여 비교표준지의 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되거나 고시된 날부터 가격시점까지의 지가변동률이 5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3. 사업인정고시일부터 가격시점까지 비교표준지가 소재하는 시·군 또는 구의 지가변동률이 비교표준지가 소재하는 시·도의 지가변동률보다 30퍼센트 이상 높거나 낮을 것

[전문개정 2013. 5. 28.]

시 행 규 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 4. 9.] [국토교통부령 제1322호, 2024. 4. 9.]

법 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9. 8.] [법률 제21901호, 2026. 9. 8., 타법개정]

시 행 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11. 10.] [대통령령 제36804호, 2026. 11. 10.]

제38조 (일시적인 이용상황)

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일시적인 이용상황은 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이나 명령 등에 따라 해당 토지를 본래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이 일시적으로 금지되거나 제한되어 그 본래의 용도와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해당 토지의 주위환경의 사정으로 보아 현재의 이용방법이 임시적인 것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 5. 28.]

제38조의2 (공시지가)

① 법 제70조제5항에 따른 취득하여야 할 토지의 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도로, 철도 또는 하천 관련 사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6. 8. 31.>

1. 해당 공익사업의 면적이 20만 제곱미터 이상일 것
2. 해당 공익사업지구 안에 있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해당 공익사업지구 안에 표준지가 없는 경우에는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표준지공시지가"라 한다)의 평균변동률과 평가대상토지가 소재하는 시(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 또는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전체의 표준지공시지가 평균변동률과의 차이가 3퍼센트포인트 이상일 것
3. 해당 공익사업지구 안에 있는 표준지공시지가의 평균변동률이 평가대상토지가 소재하는 시·군 또는 구 전체의 표준지공시지가 평균변동률보다 30퍼센트 이상 높거나 낮을 것

시 행 규 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 4. 9.] [국토교통부령 제1322호, 2024. 4. 9.]

법 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9. 8.] [법률 제21901호, 2026. 9. 8., 타법개정]	시 행 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11. 10.] [대통령령 제36804호, 2026. 11. 10.]	시 행 규 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 4. 9.] [국토교통부령 제1322호, 2024. 4. 9.]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평균변동률은 해당 표준지별 변동률의 합을 표준지의 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공익사업지구가 둘 이상의 시·군 또는 구에 걸쳐 있는 경우 평가대상토지가 소재하는 시·군 또는 구 전체의 표준지공시지가 평균변동률은 시·군 또는 구별로 평균변동률을 산정한 후 이를 해당 시·군 또는 구에 속한 공익사업지구 면적 비율로 가중평균(加重平均)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평균변동률의 산정기간은 해당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되거나 고시된 당시 공시된 표준지공시지가 중 그 공고일 또는 고시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부터 **법 제70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3. 5. 28.]	
제71조 (사용하는 토지의 보상 등) ① 협의 또는 재결에 의하여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그 토지와 인근 유사토지의 지료(地料), 임대료, 사용방법, 사용기간 및 그 토지의 가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하는 토지와 그 지하 및 지상의 공간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 및 평가방법은 투자비용, 예상수익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8. 4.]	—	—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9. 8.] [법률 제21901호, 2026. 9. 8., 타법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11. 10.] [대통령령 제36804호, 2026. 11. 1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 4. 9.] [국토교통부령 제1322호, 2024. 4. 9.]
제72조 (사용하는 토지의 매수청구 등)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거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그 토지의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은 사업시행자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그 권리의 존속(存續)을 청구할 수 있다. **1.** 토지를 사용하는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2.** 토지의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의 형질이 변경되는 경우 **3.** 사용하려는 토지에 그 토지소유자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11. 8. 4.]	—	—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9. 8.] [법률 제21901호, 2026. 9. 8., 타법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11. 10.] [대통령령 제36804호, 2026. 11. 1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 4. 9.] [국토교통부령 제1322호, 2024. 4. 9.]
제73조 (잔여지의 손실과 공사비 보상) 판례 1 ①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을 때 또는 잔여지에 통로·도랑·담장 등의 신설이나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이나 공사의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잔여지의 가격 감소분과 잔여지에 대한 공사의 비용을 합한 금액이 잔여지의 가격보다 큰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그 잔여지를 매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의 보상은 관계 법률에 따라 사업이 완료된 날 또는 제24조의2에 따른 사업완료의 고시가 있는 날(이하 "사업완료일"이라 한다)부터 1년이 지난 후에는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21. 8. 10.> ③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잔여지를 매수하는 경우 그 잔여지에 대하여는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고시가 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의 보상이나 토지의 취득에 관하여는 제9조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 단서에 따라 매수하는 잔여지 및 잔여지에 있는 물건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 및 평가방법 등에 대하여는 제70조, 제75조, 제76조, 제77조, 제78조제4항,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2. 2. 3.> [전문개정 2011. 8. 4.]	—	—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9. 8.] [법률 제21901호, 2026. 9. 8., 타법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11. 10.] [대통령령 제36804호, 2026. 11. 1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 4. 9.] [국토교통부령 제1322호, 2024. 4. 9.]
제74조 (잔여지 등의 매수 및 수용 청구) ①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용의 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할 수 있으며, 사업완료일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0.> ② 제1항에 따라 매수 또는 수용의 청구가 있는 잔여지 및 잔여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는 사업시행자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그 권리의 존속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토지의 취득에 관하여는 제73조제3항을 준용한다. ④ 잔여지 및 잔여지에 있는 물건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 및 평가방법 등에 대하여는 제70조, 제75조, 제76조, 제77조, 제78조제4항,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2. 2. 3.> [전문개정 2011. 8. 4.]	**제39조 (잔여지의 판단)** ①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잔여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 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잔여지를 매수하거나 수용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1. 대지로서 면적이 너무 작거나 부정형(不定形) 등의 사유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거나 건축물의 건축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2. 농지로서 농기계의 진입과 회전이 곤란할 정도로 폭이 좁고 길게 남거나 부정형 등의 사유로 영농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교통이 두절되어 사용이나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과 유사한 정도로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잔여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잔여지의 위치 · 형상 · 이용상황 및 용도지역 2. 공익사업 편입토지의 면적 및 잔여지의 면적 [전문개정 2013. 5. 28.]	—
제75조 (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 판례 17 ① 건축물 · 입목 · 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전비"라 한다)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	**제34조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 등의 평가)** 제28조 및 제29조의 규정은 법 제7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의 평가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목적이 되고 있는 건축물의 평가에 관하여 각각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9조중 "제22조 내지 제27조"는 "제33조제1항 · 제2항 및 제4항"으로 본다.

법 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9. 8.] [법률 제21901호, 2026. 9. 8., 타법개정]

1. 건축물등을 이전하기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건축물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3.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② 농작물에 대한 손실은 그 종류와 성장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③ 토지에 속한 흙·돌·모래 또는 자갈(흙·돌·모래 또는 자갈이 해당 토지와 별도로 취득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④ 분묘에 대하여는 이장(移葬)에 드는 비용 등을 산정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⑤ 사업시행자는 사업예정지에 있는 건축물등이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그 물건의 수용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건 및 그 밖의 물건에 대한 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및 평가방법과 보상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8. 4.]

시 행 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11. 10.] [대통령령 제36804호, 2026. 11. 10.]

시 행 규 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 4. 9.] [국토교통부령 제1322호, 2024. 4. 9.]

제35조 (잔여 건축물에 대한 평가)

① 동일한 건축물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건축물의 일부가 취득 또는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 건축물의 가격이 감소된 경우의 잔여 건축물의 손실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기 전의 잔여 건축물의 가격(해당 건축물이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됨으로 인하여 잔여 건축물의 가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되기 전의 가격을 말한다)에서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후의 잔여 건축물의 가격을 뺀 금액으로 평가한다.

② 동일한 건축물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건축물의 일부가 취득 또는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 건축물에 보수가 필요한 경우의 보수비는 건축물의 잔여부분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유용성을 동일하게 유지하는데 통상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공사에 사용되는 비용(「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시설의 개선에 필요한 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으로 평가한다.

[전문개정 2008. 4. 18.]

제36조 (공작물 등의 평가) 판례 6

① 제33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은 공작물 그 밖의 시설(이하 "공작물등"이라 한다)의 평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등은 이를 별도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공작물등의 용도가 폐지되었거나 기능이 상실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경우
2. 공작물등의 가치가 보상이 되는 다른 토지등의 가치에 충분히 반영되어 토지등의 가격이 증가한 경우
3.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공작물등에 대한 대체시설을 하는 경우

법 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9. 8.] [법률 제21901호, 2026. 9. 8., 타법개정]

시 행 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11. 10.] [대통령령 제36804호, 2026. 11. 10.]

시 행 규 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 4. 9.] [국토교통부령 제1322호, 2024. 4. 9.]

제37조 (과수 등의 평가)

① 과수 그 밖에 수익이 나는 나무(이하 이 조에서 "수익수"라 한다) 또는 관상수(묘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수종 · 규격 · 수령 · 수량 · 식수면적 · 관리상태 · 수익성 · 이식 가능성 및 이식의 난이도 그 밖에 가격형성에 관련되는 제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다.

② 지장물인 과수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다. 이 경우 이식가능성 · 이식적기 · 고손율(枯損率) 및 감수율(減收率)에 관하여는 별표 2의 기준을 참작해야 한다. <개정 2021. 8. 27.>

1. 이식이 가능한 과수

가. 결실기에 있는 과수

(1) 계절적으로 이식적기인 경우 : 이전비와 이식함으로써 예상되는 고손율 · 감수율을 고려하여 정한 고손액 및 감수액의 합계액

(2) 계절적으로 이식적기가 아닌 경우 : 이전비와 (1)의 고손액의 2배 이내의 금액 및 감수액의 합계액

나. 결실기에 이르지 아니한 과수

(1) 계절적으로 이식적기인 경우 : 이전비와 가목(1)의 고손액의 합계액

(2) 계절적으로 이식적기가 아닌 경우 : 이전비와 가목(1)의 고손액의 2배 이내의 금액의 합계액

2. 이식이 불가능한 과수

가. 거래사례가 있는 경우 :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

나. 거래사례가 없는 경우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9. 8.] [법률 제21901호, 2026. 9. 8., 타법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11. 10.] [대통령령 제36804호, 2026. 11. 1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 4. 9.] [국토교통부령 제1322호, 2024. 4. 9.]
		(1) 결실기에 있는 과수 : 식재상황 · 수세(樹勢) · 잔존수확가능연수 및 수익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 (2) 결실기에 이르지 아니한 과수 : 가격시점까지 소요된 비용을 현재의 가격으로 평가한 금액(이하 "현가액"이라 한다) ③ **법 제7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는 과수에 대하여는 제2항제2호 가목 및 나목의 예에 따라 평가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과수외의 수익수 및 관상수에 대한 평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되, 관상수의 경우에는 감수액을 고려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고손율은 당해 수익수 및 관상수 총수의 1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정하되, 이식적기가 아닌 경우에는 20퍼센트까지로 할 수 있다. ⑤ 이식이 불가능한 수익수 또는 관상수의 벌채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수목의 소유자가 당해 수목을 처분할 목적으로 벌채하는 경우에는 수목의 소유자가 부담한다. **제38조 (묘목의 평가)** ① 묘목에 대하여는 상품화 가능여부, 이식에 따른 고손율, 성장정도 및 관리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다. ② 상품화할 수 있는 묘목은 손실이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매각손실액(일시에 매각함으로 인하여 가격이 하락함에 따른 손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손실을 평가하여 보상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보상액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시기적으로 상품화가 곤란하거나 상품화를 할 수 있는 시기에 이르지 않은 묘목에 대하여는 이전비와 고손율을 고려한 고손액의 합계액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이전비는 임시로 옮겨 심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평가하며, 고손율은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9. 8.] [법률 제21901호, 2026. 9. 8., 타법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11. 10.] [대통령령 제36804호, 2026. 11. 1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 4. 9.] [국토교통부령 제1322호, 2024. 4. 9.]
		1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정하되 주위의 환경 또는 계절적 사정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퍼센트까지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 8. 27.> ④ 파종 또는 발아중에 있는 묘목에 대하여는 가격시점까지 소요된 비용의 현가액으로 평가한다. ⑤ 법 제7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는 묘목에 대하여는 거래사례가 있는 경우에는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하여 평가하고, 거래사례가 없는 경우에는 가격시점까지 소요된 비용의 현가액으로 평가한다. **제39조 (입목 등의 평가)** ① 입목(죽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별기령(「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기준벌기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수종·주수·면적 및 수익성 그 밖에 가격형성에 관련되는 제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다. <개정 2005. 2. 5., 2007. 4. 12.> ② 지장물인 조림된 용재림(用材林: 재목을 이용할 목적으로 가꾸는 나무숲을 말한다) 중 벌기령에 달한 용재림은 손실이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용재림을 일시에 벌채하게 되어 벌채 및 반출에 통상 소요되는 비용이 증가하거나 목재의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그 손실을 평가하여 보상해야 한다. <개정 2021. 8. 27.> ③ 지장물인 조림된 용재림중 벌기령에 달하지 아니한 용재림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구분에 따라 평가한다. 1. 당해 용재림의 목재가 인근시장에서 거래되는 경우 : 거래가격에서 벌채비용과 운반비를 뺀 금액. 이 경우 벌기령에 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매각에 따른 손실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9. 8.] [법률 제21901호, 2026. 9. 8., 타법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11. 10.] [대통령령 제36804호, 2026. 11. 1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 4. 9.] [국토교통부령 제1322호, 2024. 4. 9.]
		2. 당해 용재림의 목재가 인근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경우 : 가격시점까지 소요된 비용의 현가액. 이 경우 보상액은 당해 용재림의 예상총수입의 현가액에서 장래 투하비용의 현가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조림된 용재림"이라 함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시업하였거나 산림의 생산요소를 기업적으로 경영·관리하는 산림으로서 「입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등록된 입목의 집단 또는 이에 준하는 산림을 말한다. <개정 2005. 2. 5., 2007. 4. 12.> ⑤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벌기령의 10분의 9 이상을 경과하였거나 그 입목의 성장 및 관리상태가 양호하여 벌기령에 달한 입목과 유사한 입목의 경우에는 벌기령에 달한 것으로 본다. ⑥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의 벌채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⑦ 제2항·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자연림으로서 수종·수령·면적·주수·입목도·관리상태·성장정도 및 수익성 등이 조림된 용재림과 유사한 자연림의 평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⑧ 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입목의 평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0조 (수목의 수량 산정방법)** ① 제37조 내지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수목의 수량은 평가의 대상이 되는 수목을 그루별로 조사하여 산정한다. 다만, 그루별로 조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단위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표본추출방식에 의한다.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9. 8.] [법률 제21901호, 2026. 9. 8., 타법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11. 10.] [대통령령 제36804호, 2026. 11. 1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 4. 9.] [국토교통부령 제1322호, 2024. 4. 9.]
		② 수목의 손실에 대한 보상액은 정상식(경제적으로 식재목적에 부합되고 정상적인 생육이 가능한 수목의 식재상태를 말한다)을 기준으로 한 평가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41조 (농작물의 평가) ① 농작물을 수확하기 전에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의 농작물의 손실은 농작물의 종류 및 성숙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다. **1.** 파종중 또는 발아기에 있거나 묘포에 있는 농작물 : 가격시점까지 소요된 비용의 현가액 **2.** 제1호의 농작물외의 농작물 : 예상총수입의 현가액에서 장래 투하비용의 현가액을 뺀 금액. 이 경우 보상당시에 상품화가 가능한 풋고추·들깻잎 또는 호박 등의 농작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다. ② 제1항제2호에서 "예상총수입"이라 함은 당해 농작물의 최근 3년간(풍흉작이 현저한 연도를 제외한다)의 평균총수입을 말한다.
		제42조 (분묘에 대한 보상액의 산정) ①「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이하 이 조에서 "연고자"라 한다)가 있는 분묘에 대한 보상액은 다음 각호의 합계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직접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등에게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5. 2. 5., 2007. 4. 12., 2008. 4. 18., 2012. 1. 2., 2021. 8. 27., 2022. 1. 21.> **1.** 분묘이전비 : 4분판 1매·마포 24미터 및 전지 5권의 가격, 제례비, 임금 5인분(합장인 경우에는 사체 1구당 각각의 비용의 50퍼센트를 가산한다) 및 운구차량비

법 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9. 8.] [법률 제21901호, 2026. 9. 8., 타법개정]	시 행 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11. 10.] [대통령령 제36804호, 2026. 11. 10.]	시 행 규 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 4. 9.] [국토교통부령 제1322호, 2024. 4. 9.]
		2. 석물이전비 : 상석 및 비석 등의 이전실비(좌향이 표시되어 있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이전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작 · 운반비를 말한다) 3. 잡비 :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4. 이전보조비 : 100만원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운구차량비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 나목의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적용되는 운임 · 요금중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운임 · 요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05. 2. 5.> ③ 연고자가 없는 분묘에 대한 보상액은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산정한다. **제43조 (광업권의 평가)** ① 광업권에 대한 손실의 평가는 「광업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다. <개정 2005. 2. 5., 2007. 9. 27., 2024. 4. 9.> ② 조업중인 광산이 토지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의 손실은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영업이익은 최근 3년간의 연평균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한다. ③ 광물매장량의 부재(채광으로 채산이 맞지 아니하는 정도로 매장량이 소량이거나 이에 준하는 상태를 포함한다)로 인하여 휴업중인 광산은 손실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75조의2 (잔여 건축물의 손실에 대한 보상 등) ①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건축물의 일부가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 건축물의 가격이	—	—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9. 8.] [법률 제21901호, 2026. 9. 8., 타법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11. 10.] [대통령령 제36804호, 2026. 11. 1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 4. 9.] [국토교통부령 제1322호, 2024. 4. 9.]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잔여 건축물의 가격 감소분과 보수비(건축물의 나머지 부분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유용성을 동일하게 유지하는 데에 일반적으로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공사에 사용되는 비용을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를 합한 금액이 잔여 건축물의 가격보다 큰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그 잔여 건축물을 매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건축물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 건축물을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그 건축물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 건축물을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용 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하되, 사업완료일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0.> ③ 제1항에 따른 보상 및 잔여 건축물의 취득에 관하여는 **제9조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 본문에 따른 보상에 관하여는 **제73조제2항**을 준용하고,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른 잔여 건축물의 취득에 관하여는 **제73조제3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취득하는 잔여 건축물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 및 평가방법 등에 대하여는 **제70조**, **제75조**, **제76조**, **제77조**, **제78조제4항**,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2. 2. 3.> [전문개정 2011. 8. 4.]		

법 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9. 8.] [법률 제21901호, 2026. 9. 8., 타법개정]	시 행 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11. 10.] [대통령령 제36804호, 2026. 11. 10.]	시 행 규 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 4. 9.] [국토교통부령 제1322호, 2024. 4. 9.]
제76조 (권리의 보상) 판례 2 ① 광업권 · 어업권 · 양식업권 및 물(용수시설을 포함한다) 등의 사용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는 투자비용, 예상 수익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27.>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및 평가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8. 4.]	—	—
제77조 (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 판례 6 ①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② 농업의 손실에 대하여는 농지의 단위면적당 소득 등을 고려하여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농지소유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에는 농지소유자와 실제 경작자가 협의하는 바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 ③ 휴직하거나 실직하는 근로자의 임금손실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및 평가 방법과 보상기준, 제2항에 따른 실제 경작자 인정기준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8. 4.]	—	**제45조 (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인 영업)** 판례 4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은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영업으로 한다. <개정 2007. 4. 12., 2009. 11. 13., 2015. 4. 28.> 1.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에서 인적 · 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을 말한다. 2.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 **제48조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판례 1 ①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농지(「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65조에서 같다)에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9. 8.] [법률 제21901호, 2026. 9. 8., 타법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11. 10.] [대통령령 제36804호, 2026. 11. 1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 4. 9.] [국토교통부령 제1322호, 2024. 4. 9.]
		대하여는 그 면적에「통계법」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매년 조사·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통계의 도별 농업총수입 중 농작물수입을 도별 표본농가현황 중 경지면적으로 나누어 산정한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총수입(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는 경기도, 대전광역시는 충청남도, 광주광역시는 전라남도, 대구광역시는 경상북도,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는 경상남도의 통계를 각각 적용한다)의 직전 3년간 평균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한다. <개정 2005. 2. 5., 2007. 4. 12., 2008. 4. 18., 2013. 4. 25., 2015. 4. 28.>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관보에 고시하는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이하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제소득을 입증하는 자가 경작하는 편입농지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면적에 단위경작면적당 3년간 실제소득 평균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3., 2013. 4. 25., 2014. 10. 22., 2020. 12. 11.> 1. 단위경작면적당 실제소득이「통계법」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매년 조사·발표하는 농축산물소득자료집의 작목별 평균소득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작목별 단위경작면적당 평균생산량의 2배 (단위경작면적당 실제소득이 현저히 높다고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에서 따로 배수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를 판매한 금액을 단위경작면적당 실제소득으로 보아 이에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2.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에서 직접 해당 농지의 지력(地力)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재배 중인 작물을 이전하여 해당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9. 8.] [법률 제21901호, 2026. 9. 8., 타법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11. 10.] [대통령령 제36804호, 2026. 11. 1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 4. 9.] [국토교통부령 제1322호, 2024. 4. 9.]
		영농을 계속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단위경작면적당 실제소득(제1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결정된 단위경작면적당 실제소득을 말한다)의 4개월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③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이를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5. 2. 5.> 1. 사업인정고시일등 이후부터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2. 토지이용계획·주위환경 등으로 보아 일시적으로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3. 타인소유의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여 경작하고 있는 토지 4. 농민(「농지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법인 또는 「농지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및 동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아닌 자가 경작하고 있는 토지 5. 토지의 취득에 대한 보상 이후에 사업시행자가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도록 허용하는 토지 ④ 자경농지가 아닌 농지에 대한 영농손실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상한다. <개정 2008. 4. 18., 2013. 4. 25.> 1. 농지의 소유자가 해당 지역(영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지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 가. 농지의 소유자와 제7항에 따른 실제 경작자(이하 "실제 경작자"라 한다)간에 협의가 성립된 경우 : 협의내용에 따라 보상 나. 농지의 소유자와 실제 경작자 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보상 1) 제1항에 따라 영농손실액이 결정된 경우: 농지의 소유자와 실제 경작자에게 각각 영농손실액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9. 8.] [법률 제21901호, 2026. 9. 8., 타법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11. 10.] [대통령령 제36804호, 2026. 11. 1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 4. 9.] [국토교통부령 제1322호, 2024. 4. 9.]
		2) 제2항에 따라 영농손실액이 결정된 경우: 농지의 소유자에게는 제1항의 기준에 따라 결정된 영농손실액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하고, 실제 경작자에게는 제2항에 따라 결정된 영농손실액 중 농지의 소유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 **2.** 농지의 소유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이 아닌 경우 :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 ⑤ 실제 경작자가 자의로 이농하는 등의 사유로 보상협의일 또는 수용재결일 당시에 경작을 하고 있지 않는 경우의 영농손실액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농지의 소유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에 한정하여 농지의 소유자에게 보상한다. <개정 2008. 4. 18., 2020. 12. 11.> ⑥ 당해 지역에서 경작하고 있는 농지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이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됨으로 인하여 농기구를 이용하여 해당 지역에서 영농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과수 등 특정한 작목의 영농에만 사용되는 특정한 농기구의 경우에는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면적에 관계없이 해당 지역에서 해당 영농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한다) 해당 농기구에 대해서는 매각손실액을 평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매각손실액의 평가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원가법에 의하여 산정한 가격의 60퍼센트 이내에서 매각손실액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7. 4. 12., 2013. 4. 25.> ⑦ **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실제 경작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에 따라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타인소유의 농지를 임대차 등 적법한 원인으로 점유하고 자기소유의 농작물을 경작하는 것으로 인정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실제 경작자로 인정받으려는 자가 제5호의 자료만 제출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해당 농지의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으며, 농지소유자가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법 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9. 8.] [법률 제21901호, 2026. 9. 8., 타법개정]

시 행 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11. 10.] [대통령령 제36804호, 2026. 11. 10.]

시 행 규 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 4. 9.] [국토교통부령 제1322호, 2024. 4. 9.]

않는 경우에는 제2호의 자료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08. 4. 18., 2009. 11. 13., 2015. 4. 28., 2020. 12. 11.>

1. 농지의 임대차계약서
2. 농지소유자가 확인하는 경작사실확인서
3.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지불금의 수령 확인자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5.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의 이장·통장이 확인하는 경작사실확인서
6. 그 밖에 실제 경작자임을 증명하는 객관적 자료

제49조 (축산업의 손실에 대한 평가)

① 제45조부터 제47조(다음 각 호의 규정은 제외한다)까지의 규정은 축산업에 대한 손실의 평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7. 4. 12., 2014. 10. 22.>

1. 제46조제3항 후단
2.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영업장소 이전 후 발생하는 영업이익감소액의 경우만 해당한다) 및 제7항
3. 제47조제5항 후단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축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05. 2. 5., 2007. 4. 12., 2008. 4. 18., 2015. 4. 28.>

1.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등록한 종축업·부화업·정액등처리업 또는 가축사육업
2. 별표 3에 규정된 가축별 기준마리수 이상의 가축을 기르는 경우
3. 별표 3에 규정된 가축별 기준마리수 미만의 가축을 기르는 경우로서 그 가축별 기준마리수에 대한 실제 사육마리수의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9. 8.] [법률 제21901호, 2026. 9. 8., 타법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11. 10.] [대통령령 제36804호, 2026. 11. 1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 4. 9.] [국토교통부령 제1322호, 2024. 4. 9.]
		비율의 합계가 1 이상인 경우 ③ 별표 3에 규정된 가축외에 이와 유사한 가축에 대하여는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예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가축에 대하여는 이전비로 평가하되, 이전으로 인하여 체중감소·산란율저하 및 유산 그 밖의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평가한다.
		제50조 (잠업의 손실에 대한 평가) 제45조부터 제47조(다음 각 호의 규정은 제외한다)까지의 규정은 잠업에 대한 손실의 평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7. 4. 12., 2014. 10. 22.> 1. 제46조제3항 후단 2.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영업장소 이전 후 발생하는 영업이익감소액의 경우만 해당한다) 및 제7항 3. 제47조제5항 후단
		제51조 (휴직 또는 실직보상)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공익사업시행지구안의 사업장에서 3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자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5. 2. 5., 2016. 6. 14.> 1. 근로장소의 이전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휴직을 하게 된 경우 : 휴직일수(휴직일수가 120일을 넘는 경우에는 120일로 본다)에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곱한 금액. 다만,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이 「근로기준법」에 의한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9. 8.] [법률 제21901호, 2026. 9. 8., 타법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11. 10.] [대통령령 제36804호, 2026. 11. 1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 4. 9.] [국토교통부령 제1322호, 2024. 4. 9.]
		2. 근로장소의 폐지 등으로 인하여 직업을 상실하게 된 경우 :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
		제52조 (허가등을 받지 아니한 영업의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허가등을 받아야 행할 수 있는 영업을 허가등이 없이 행하여 온 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제45조제1호 본문에 따른 적법한 장소에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제45조제2호에 불구하고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3인 가구 3개월분 가계지출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급하되, 제4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영업시설·원재료·제품 및 상품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이하 이 조에서 "영업시설등의 이전비용"이라 한다)은 별도로 보상한다. 다만,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 세대안의 직계존속·비속 및 배우자가 해당 공익사업으로 다른 영업에 대한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시설등의 이전비용만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8. 4. 18.> [전문개정 2007. 4. 12.]
제78조 (이주대책의 수립 등) 판례 22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0조 (이주대책의 수립·실시)** 판례 8 ① 사업시행자가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이하 "이주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을 같은 항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이주대책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주대책대상자 중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의 가구 수가 10호(戶) 이상인 경우에	**제53조 (이주정착금 등)** ① 영 제40조제2항 본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3., 2020. 12. 11.> 1. 공익사업시행지구의 인근에 택지 조성에 적합한 토지가 없는 경우 2. 이주대책에 필요한 비용이 당해 공익사업의 본래의 목적을 위한 소요비용을 초과하는 등 이주대책의 수립·실시로

법 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9. 8.] [법률 제21901호, 2026. 9. 8., 타법개정]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의 건설에 대하여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6.>

④ 이주대책의 내용에는 이주정착지(이주대책의 실시로 건설하는 주택단지를 포함한다)에 대한 도로, 급수시설, 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통상적인 수준의 생활기본시설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받기로 결정된 권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 전매(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은 제외한다)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거나 해당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의 실시가 아닌 이주정착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22. 2. 3.>

1. 제93조, 제96조 및 제97조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2.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제1항 및 제58조제1항제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3.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28조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⑥ 주거용 건물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주거 이전에 필요한 비용과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3.>

⑦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위하던 농업·어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농민·어민이 받을 보상금이 없거나 그 총액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 행 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11. 10.] [대통령령 제36804호, 2026. 11. 10.]

수립·실시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촉진법」 또는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한 경우(사업시행자의 알선에 의하여 공급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한 것으로 본다.

③ 법 제4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사업(이하 이 조에서 "부수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부수사업의 원인이 되는 법 제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이하 이 조에서 "주된사업"이라 한다)의 이주대책에 부수사업의 이주대책을 포함하여 수립·실시하여 줄 것을 주된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수사업 이주대책대상자의 이주대책을 위한 비용은 부수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신설 2018. 4. 17.>

1. 부수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법 제78조제1항 및 이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 주된사업의 이주대책 수립이 완료되지 아니하였을 것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이주대책의 수립·실시 요청을 받은 주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법 제78조제1항 및 이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8. 4. 17.>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6. 1. 6., 2018. 4. 17.>

1.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의 소유자
2. 해당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시 행 규 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 4. 9.] [국토교통부령 제1322호, 2024. 4. 9.]

인하여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이 사실상 곤란하게 되는 경우

② 영 제41조에 따른 이주정착금은 보상대상인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평가액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1천2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천2백만원으로 하고, 2천4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4백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2. 1. 2., 2020. 12. 11.>

제54조 (주거이전비의 보상) 판례 6

①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에 가구원수에 따라 2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가 해당 건축물 또는 공익사업시행지구 내 타인의 건축물에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해당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 6.>

②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무상으로 사용하는 거주자를 포함하되,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인 세입자는 제외한다)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당시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안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해서는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해야 한다.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 입주한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당시 그 공익사업지구 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 대해서는 본문에 따라 주거이전비를 보상해야 한다. <개정 2007. 4. 12., 2016. 1. 6., 2020. 12. 1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거주사실의 입증은 제15조제1항 각 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11.>

법 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9. 8.] [법률 제21901호, 2026. 9. 8., 타법개정]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 또는 그 차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2. 2. 3.>

⑧ 사업시행자는 해당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 · 제1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이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 공익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우선적으로 고용할 수 있으며, 이들의 취업 알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3.>

⑨ 제4항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에 필요한 비용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 2. 3.>

⑩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3. 3. 23., 2022. 2. 3.>

[전문개정 2011. 8. 4.]

시 행 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11. 10.] [대통령령 제36804호, 2026. 11. 10.]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질병으로 인한 요양

나. 징집으로 인한 입영

다. 공무

라. 취학

마. 해당 공익사업지구 내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의 거주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

3.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 다만, 해당 공익사업지구에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한 자로서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제외한다.

⑥ 제2항 본문에 따른 이주정착지 안의 택지 또는 주택을 취득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른 택지 또는 주택을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은 이주대책대상자의 희망에 따라 그가 지급받을 보상금과 상계(相計)할 수 있다. <개정 2018. 4. 17.>

[전문개정 2013. 5. 28.]

제41조 (이주정착금의 지급)

사업시행자는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주대책대상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정착금을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21. 11. 23.>

1. 이주대책을 수립 ·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이주대책대상자가 이주정착지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려는 경우
3. 이주대책대상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날의 1년 전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시 행 규 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 4. 9.] [국토교통부령 제1322호, 2024. 4. 9.]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거이전비는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 · 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명목 가계지출비(이하 이 항에서 "월평균 가계지출비"라 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23. 4. 17.>

1. 가구원수가 5인인 경우: 5인 이상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4인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가 5인 이상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4인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가구원수가 6인 이상인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
   제1호에 따른 금액 + {5인을 초과하는 가구원수 × [(제1호에 따른 금액 - 2인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 ÷ 3]}

제55조 (동산의 이전비 보상 등)

①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에 따라 이전하여야 하는 동산(제2항에 따른 이사비의 보상대상인 동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7. 4. 12.>

②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가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으로 이사를 하거나 사업시행자가 지정하는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안의 장소로 이사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이사비(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2., 2023. 4. 17.>

③ 이사비의 보상을 받은 자가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안의 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이사비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법 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9. 8.] [법률 제21901호, 2026. 9. 8., 타법개정]

시 행 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11. 10.] [대통령령 제36804호, 2026. 11. 10.]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해당 건축물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4. 이주대책대상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날 당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업체에 소속(다른 기관·업체에 소속된 사람이 파견 등으로 각 목의 기관·업체에서 근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어 있거나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가. 국토교통부

나. 사업시행자

다.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협의하거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공익사업의 허가·인가·승인 등 기관

라.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기 전에 관계 법령에 따라 실시한 협의, 의견청취 등의 대상자였던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전문개정 2013. 5. 28.]

제41조의2 (생활기본시설의 범위 등)

① 법 제78조제4항 본문에 따른 통상적인 수준의 생활기본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도로(가로등·교통신호기를 포함한다)
2. 상수도 및 하수처리시설
3. 전기시설
4. 통신시설
5. 가스시설

② 법 제78조제9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생활기본시설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행자가

시 행 규 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 4. 9.] [국토교통부령 제1322호, 2024. 4. 9.]

제56조 (이농비 또는 이어비의 보상)

① 법 제78조제7항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통계의 연간 전국평균 가계지출비 및 농업기본통계조사의 가구당 전국평균 농가인구를 기준으로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가구원수에 따른 1년분의 평균생계비를 말한다. <개정 2005. 2. 5., 2007. 4. 12., 2008. 3. 14., 2008. 4. 18., 2013. 3. 23., 2023. 4. 17.> 가구원수에 따른 1년분의 평균생계비 = 연간 전국평균 가계지출비 ÷ 가구당 전국평균 농가인구 × 이주가구원수

② 제1항에 따른 이농비 또는 이어비(離漁費)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위하던 농·어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외의 지역으로 이주하는 농민(「농지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를 말한다) 또는 어민(연간 20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에게 보상한다. <신설 2007. 4. 12.>

1.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농지의 소재지(어민인 경우에는 주소지를 말한다)와 동일한 시·군 또는 구
2. 제1호의 지역과 인접한 시·군 또는 구

제57조 (사업폐지 등에 대한 보상)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건축허가 등 관계법령에 의한 절차를 진행중이던 사업 등이 폐지·변경 또는 중지되는 경우 그 사업 등에 소요된 법정수수료 그 밖의 비용 등의 손실에 대하여는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법 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9. 8.] [법률 제21901호, 2026. 9. 8., 타법개정]

시 행 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11. 10.] [대통령령 제36804호, 2026. 11. 10.]

부담하는 비용"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22. 5. 9.>

1.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비용 = 해당 공익사업지구 안에 설치하는 제1항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비용 × (해당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유상으로 공급하는 택지면적 ÷ 해당 공익사업지구에서 유상으로 공급하는 용지의 총면적)
2.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비용 = 해당 공익사업지구 안에 설치하는 제1항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비용 × (해당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유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의 대지면적 ÷ 해당 공익사업지구에서 유상으로 공급하는 용지의 총면적)

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해당 공익사업지구 안에 설치하는 제1항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비용은 해당 생활기본시설을 설치하는 데 드는 공사비, 용지비 및 해당 생활기본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법령에 따라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 5. 28.]

시 행 규 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 4. 9.] [국토교통부령 제1322호, 2024. 4. 9.]

제58조 (주거용 건축물등의 보상에 대한 특례)

① 주거용 건축물로서 제33조에 따라 평가한 금액이 6백만원 미만인 경우 그 보상액은 6백만원으로 한다.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4. 12., 2014. 10. 22.>

②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받은 자가 그 후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지역에서 매입하거나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주거용 건축물이 그 보상일부터 20년 이내에 다른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경우 그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대지(보상을 받기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대지 또는 다른 사람 소유의 대지위에 건축한 경우에는 주거용 건축물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평가액의 30퍼센트를 가산하여 보상한다.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을 매입 또는 건축한 경우와 다른 공익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등 또는 다른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 이후에 매입 또는 건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4. 12.>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으로 한다.

제59조 (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대지 등에 대한 보상)

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대지(조성된 대지를 말한다)·건축물·분묘 또는 농지(계획적으로 조성된 유실수단지 및 죽림단지를 포함한다)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산지나 하천 등에 둘러싸여 교통이 두절되거나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그 보상비가 도로 또는 도선시설의 설치비용을 초과하는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9. 8.] [법률 제21901호, 2026. 9. 8., 타법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11. 10.] [대통령령 제36804호, 2026. 11. 1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 4. 9.] [국토교통부령 제1322호, 2024. 4. 9.]
		경우에는 도로 또는 도선시설을 설치함으로써 보상에 갈음할 수 있다. **제60조 (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건축물에 대한 보상)** 소유농지의 대부분이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됨으로써 건축물(건축물의 대지 및 잔여농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만이 공익사업시행지구밖에 남게 되는 경우로서 그 건축물의 매매가 불가능하고 이주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하여야 한다. **제61조 (소수잔존자에 대한 보상)**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1개 마을의 주거용 건축물이 대부분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됨으로써 잔여 주거용 건축물 거주자의 생활환경이 현저히 불편하게 되어 이주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소유자의 토지등을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하여야 한다. **제62조 (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공작물등에 대한 보상)** 공익사업시행지구밖에 있는 공작물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하여야 한다. **제63조 (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어업의 피해에 대한 보상)** ①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인근에 있는 어업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실제 피해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 그 피해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제 피해액은 감소된 어획량 및 「수산업법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9. 8.] [법률 제21901호, 2026. 9. 8., 타법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11. 10.] [대통령령 제36804호, 2026. 11. 1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 4. 9.] [국토교통부령 제1322호, 2024. 4. 9.]
		시행령」 별표 10의 평년수익액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다. <개정 2005. 2. 5., 2007. 4. 12., 2008. 4. 18., 2012. 1. 2., 2024. 4. 9.>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액은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10에 따른 어업권·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이 취소되거나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이 연장되지 않는 경우의 보상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신설 2007. 4. 12., 2008. 4. 18., 2012. 1. 2., 2024. 4. 9.> ③ 사업인정고시일등 이후에 어업권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어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7. 4. 12.> **제64조 (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 판례 3 ① 공익사업시행지구밖에서 제45조에 따른 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이 되는 영업을 하고 있는 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영업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해 영업을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7. 4. 12.> 1. 배후지의 3분의 2 이상이 상실되어 그 장소에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진출입로의 단절,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휴업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는 영업자가 보상을 받은 이후에 그 영업장소에서 영업이익을 보상받은 기간 이내에 동일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실제 휴업기간에 대한 보상금을 제외한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신설 2007. 4. 12.>

법 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9. 8.] [법률 제21901호, 2026. 9. 8., 타법개정]	시 행 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11. 10.] [대통령령 제36804호, 2026. 11. 10.]	시 행 규 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 4. 9.] [국토교통부령 제1322호, 2024. 4. 9.]
제78조의2 (공장의 이주대책 수립 등)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공장부지가 협의 양도되거나 수용됨에 따라 더 이상 해당 지역에서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을 가동할 수 없게 된 자가 희망하는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개발된 인근 산업단지에 입주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주대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41조의3 (공장에 대한 이주대책에 관한 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78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 4. 29., 2015. 12. 28.> 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 4.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조성사업 5.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6.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② 법 제78조의2에 따른 공장의 이주대책에 관한 계획에는 해당 공익사업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공익사업 지역 인근 지역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개발된 산업단지(이하 "산업단지"라 한다)가 있는 경우 해당 산업단지의 우선 분양 알선 2. 해당 공익사업 지역 인근 지역에 해당 사업시행자가 공장이주대책을 위한 별도의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그 산업단지의 조성 및 입주계획 3. 해당 공익사업 지역에 조성되는 공장용지의 우선 분양 4. 그 밖에 원활한 공장 이주대책을 위한 행정적 지원방안 [전문개정 2013. 5. 28.]	—
제79조 (그 밖의 토지에 관한 비용보상 등) 판례 3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토지(잔여지를 포함한다) 외의 토지에 통로·도랑·담장 등의 신설이나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할	**제41조의4 (그 밖의 토지에 관한 손실의 보상계획 공고)** 법 제79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상에 관한 계획을 공고할 때에는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6. 11. 10.>	—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9. 8.] [법률 제21901호, 2026. 9. 8., 타법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11. 10.] [대통령령 제36804호, 2026. 11. 1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 4. 9.] [국토교통부령 제1322호, 2024. 4. 9.]
때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토지에 대한 공사의 비용이 그 토지의 가격보다 큰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그 토지를 매수할 수 있다. ②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밖에 있는 토지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할 때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보상에 관한 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의 보상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3. 3. 23.> ⑤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른 비용 또는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제73조제2항**을 준용한다. ⑥ 제1항 단서에 따른 토지의 취득에 관하여는 **제73조제3항**을 준용한다. ⑦ 제1항 단서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 및 평가 방법 등에 대하여는 **제70조**, **제75조**, **제76조**, **제77조**, **제78조제4항**,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2. 2. 3.> [전문개정 2011. 8. 4.]	[전문개정 2013. 5. 28.]	

법 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9. 8.] [법률 제21901호, 2026. 9. 8., 타법개정]	시 행 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11. 10.] [대통령령 제36804호, 2026. 11. 10.]	시 행 규 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 4. 9.] [국토교통부령 제1322호, 2024. 4. 9.]
제80조 (손실보상의 협의 · 재결) 판례 1 ① 제7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 또는 손실이나 토지의 취득에 대한 보상은 사업시행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사업시행자나 손실을 입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8. 4.]	**제42조 (손실보상 또는 비용보상 재결의 신청 등)** ① 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재결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손실보상재결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재결의 신청인과 상대방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3. 손실 발생사실 4. 손실보상액과 그 명세 5. 협의의 내용 ② 제1항의 신청에 따른 손실보상의 재결을 위한 심리에 관하여는 법 제32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3. 5. 28.]	—
제81조 (보상업무 등의 위탁) ① 사업시행자는 보상 또는 이주대책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2. 보상실적이 있거나 보상업무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시 업무범위,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43조 (보상전문기관 등)** ① 법 제8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 12. 23., 2016. 8. 31., 2020. 12. 8., 2026. 5. 12.>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3.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5.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6.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 7.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및 특례시(「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를 말한다)가 택지개발 및 주택건설 등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설립한 지방공사	—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9. 8.] [법률 제21901호, 2026. 9. 8., 타법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11. 10.] [대통령령 제36804호, 2026. 11. 1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 4. 9.] [국토교통부령 제1322호, 2024. 4. 9.]
	② 사업시행자는 **법 제8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81조제1항** 각 호의 기관(이하 "보상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7.> **1.** 보상계획의 수립·공고 및 열람에 관한 업무 **2.**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등 공부의 조사. 이 경우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은 부동산종합공부의 조사로 대신할 수 있다. **3.** 토지등의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 관련 사항의 조사 **4.** 분할측량 및 지적등록에 관한 업무 **5.**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기재사항에 관한 조사 **6.** 잔여지 및 공익사업지구 밖의 토지등의 보상에 관한 조사 **7.** 영업·농업·어업 및 광업 손실에 관한 조사 **8.** 보상액의 산정(감정평가업무는 제외한다) **9.** 보상협의, 계약체결 및 보상금의 지급 **10.** 보상 관련 민원처리 및 소송수행 관련 업무 **11.** 토지등의 등기 관련 업무 **12.** 이주대책의 수립·실시 또는 이주정착금의 지급 **13.** 그 밖에 보상과 관련된 부대업무 ③ 사업시행자는 **법 제81조**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보상전문기관에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탁내용과 위탁조건에 관하여 보상전문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법 제81조**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보상전문기관에 위탁할 때에는 별표 1에 따른 위탁수수료를 보상전문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제2항 각 호의 업무 중 일부를 보상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의 위탁수수료는 사업시행자와 보상전문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⑤ 사업시행자는 보상전문기관이 통상적인 업무수행에 드는 경비가 아닌 평가수수료·측량수수료·등기수수료 및 변호사의 보수 등 특별한 비용을 지출하였을 때에는 이를	

법 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9. 8.] [법률 제21901호, 2026. 9. 8., 타법개정]

시 행 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11. 10.] [대통령령 제36804호, 2026. 11. 10.]

제4항에 따른 위탁수수료와는 별도로 보상전문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5. 28.]

제50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사업시행자(법 제81조에 따라 보상 또는 이주대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발급 신청에 관한 사무
2. 법 제14조에 따른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에 관한 사무
3. 법 제15조에 따른 보상계획의 공고 및 통지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토지등에 대한 보상에 관한 협의 및 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무
5. 법 제28조제1항 및 제30조제2항에 따른 재결 신청에 관한 사무
6. 법 제29조에 따른 토지등에 대한 보상에 관한 협의 성립의 확인 신청에 관한 사무
7. 법 제38조에 따른 천재지변 시의 토지의 사용에 관한 사무
8. 법 제40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에 관한 사무
9. 법 제6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토(代土)보상에 관한 사무 및 같은 조 제7항·제8항에 따른 채권보상에 관한 사무
10. 법 제70조에 따른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에 관한 사무
11. 법 제71조에 따른 사용하는 토지의 보상에 관한 사무
12. 법 제76조에 따른 권리의 보상에 관한 사무

시 행 규 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 4. 9.] [국토교통부령 제1322호, 2024. 4. 9.]

법 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9. 8.] [법률 제21901호, 2026. 9. 8., 타법개정]	시 행 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11. 10.] [대통령령 제36804호, 2026. 11. 10.]	시 행 규 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 4. 9.] [국토교통부령 제1322호, 2024. 4. 9.]
	13. 법 제77조에 따른 영업손실, 농업손실, 휴직 또는 실직 근로자의 임금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무 14. 법 제78조 및 제78조의2에 따른 이주대책의 수립 및 공장의 이주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무 15. 법 제79조제2항에 따른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밖의 토지등에 관한 손실보상에 관한 사무 16. 법 제91조 및 제92조에 따른 토지의 환매 및 환매권의 통지 등에 관한 사무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토지수용위원회 위원의 위촉과 관련하여 법 제54조에 따른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8. 6.][종전 제50조의2는 제50조의3으로 이동 <2014. 8. 6.>] **제50조의3** 삭제 <2016. 12. 30.>	
제82조 (보상협의회) ①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보상협의회를 둘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협의회를 두어야 한다. 1. 보상액 평가를 위한 사전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2. 잔여지의 범위 및 이주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3. 해당 사업지역 내 공공시설의 이전 등에 관한 사항	**제44조 (임의적 보상협의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보상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보상협의회"라 한다)는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설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이 둘 이상의 시·군 또는 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협의하여 보상협의회를 설치할 시·군 또는 구를 결정하여야 한다.	—

법 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9. 8.] [법률 제21901호, 2026. 9. 8., 타법개정]

4. 토지소유자나 관계인 등이 요구하는 사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보상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보상협의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2. 법관, 변호사, 공증인 또는 감정평가나 보상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4. 사업시행자

③ 보상협의회의 설치 ·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시 행 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11. 10.] [대통령령 제36804호, 2026. 11. 10.]

③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상협의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보상협의회를 설치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보상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상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사업시행자를 위원에 포함시키고, 위원 중 3분의 1 이상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⑤ 보상협의회의 위원장은 해당 특별자치도 · 시 · 군 또는 구의 부지사 · 부시장 · 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보상협의회의 위원장은 보상협의회를 대표하며, 보상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⑦ 보상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

⑧ 보상협의회의 위원장은 회의에서 협의된 사항을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반영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⑨ 보상협의회에 보상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와 서기는 보상협의회의 위원장이 해당 특별자치도 · 시 · 군 또는 구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⑩ 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사업시행자는 보상협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⑪ 위원장은 사업시행자의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보상협의회를 운영하여야 하며, 보상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시 행 규 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 4. 9.] [국토교통부령 제1322호, 2024. 4. 9.]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9. 8.] [법률 제21901호, 2026. 9. 8., 타법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11. 10.] [대통령령 제36804호, 2026. 11. 1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 4. 9.] [국토교통부령 제1322호, 2024. 4. 9.]

사항은 보상협의회의 회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3. 5. 28.]

제44조의2 (의무적 보상협의회의 설치 ·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보상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보상협의회"라 한다)는 제2항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에 대하여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시 · 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설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설치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시 · 군 또는 구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상협의회 설치가 곤란한 경우
2.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이 둘 이상의 시 · 군 또는 구에 걸쳐 있는 경우로서 보상협의회 설치를 위한 해당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간의 협의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② **법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익사업"이란 해당 공익사업지구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이고, 토지등의 소유자가 50인 이상인 공익사업을 말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보상협의회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보상협의회를 설치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보상협의회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보상협의회를 설치하고,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9. 8.] [법률 제21901호, 2026. 9. 8., 타법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11. 10.] [대통령령 제36804호, 2026. 11. 1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 4. 9.] [국토교통부령 제1322호, 2024. 4. 9.]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보상협의회의 위원장은 해당 특별자치도, 시·군 또는 구의 부지사, 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보상협의회의 경우 위원은 해당 사업시행자가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⑤ 보상협의회에 보상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와 서기는 보상협의회의 위원장이 해당 특별자치도, 시·군 또는 구의 소속 공무원(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보상협의회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소속 임직원을 말한다) 중에서 임명한다. ⑥ 제1항에 따른 보상협의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44조제2항**, 제4항,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10항 및 제11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3. 5. 28.]	

제7장 이의신청 등

제83조 ~ 제90조 · 법률 9개 조문

법 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9. 8.] [법률 제21901호, 2026. 9. 8., 타법개정]

제83조 (이의의 신청) 판례 3

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제34조에 따른 재결에 이의가 있는 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제34조에 따른 재결에 이의가 있는 자는 해당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의 신청은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시 행 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11. 10.] [대통령령 제36804호, 2026. 11. 10.]

제45조 (이의의 신청)

① 법 제83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의신청서(이하 "이의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재결서 정본의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신청의 요지 및 이유

② 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그 이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짜 등이 적힌 우편송달통지서 사본
2.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의뢰하여 행한 감정평가서 및 심의안건 사본
3. 그 밖에 이의신청의 재결에 필요한 자료

③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법 제83조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의 상대방에게 그 신청의 요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주소·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3. 5. 28.]

시 행 규 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 4. 9.] [국토교통부령 제1322호, 2024. 4. 9.]

제67조 (이의신청서의 서식)

영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

법 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9. 8.] [법률 제21901호, 2026. 9. 8., 타법개정]	시 행 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11. 10.] [대통령령 제36804호, 2026. 11. 10.]	시 행 규 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 4. 9.] [국토교통부령 제1322호, 2024. 4. 9.]
제84조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판례 2 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제83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제34조에 따른 재결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재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보상액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이 늘어난 경우 사업시행자는 재결의 취소 또는 변경의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받을 자에게 그 늘어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40조제2항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금액을 공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8. 4.]	**제46조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의 송달)**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법 제84조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을 한 경우에는 재결서의 정본을 사업시행자·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5. 28.]	—
제85조 (행정소송의 제기) 판례 8 ①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제34조에 따른 재결에 불복할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쳤을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제84조에 따라 늘어난 보상금을 공탁하여야 하며, 보상금을 받을 자는 공탁된 보상금을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수령할 수 없다. <개정 2018. 12. 31.> ② 제1항에 따라 제기하려는 행정소송이 보상금의 증감(增減)에 관한 소송인 경우 그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일 때에는 사업시행자를, 사업시행자일 때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을 각각 피고로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	—

법 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9. 8.] [법률 제21901호, 2026. 9. 8., 타법개정]	시 행 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11. 10.] [대통령령 제36804호, 2026. 11. 10.]	시 행 규 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 4. 9.] [국토교통부령 제1322호, 2024. 4. 9.]
제86조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의 효력) ① 제85조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확정된 때에는 「민사소송법」상의 확정판결이 있은 것으로 보며, 재결서 정본은 집행력 있는 판결의 정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②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결확정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8. 4.]	**제47조 (재결확정증명서)** ① 사업시행자·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법 제86조제2항에 따른 재결확정증명서(이하 이 조에서 "재결확정증명서"라 한다)의 발급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재결확정증명청구서에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의 정본을 첨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결확정증명서는 재결서 정본의 끝에 「민사집행법」 제29조제2항에 준하여 집행문을 적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간사 또는 서기가 기명날인한 후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장의 직인을 날인하여 발급한다. ③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재결확정증명서를 발급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행정소송의 제기 여부를 관할 법원에 조회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5. 28.]	**제68조 (재결확정증명청구서의 서식)** 영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확정증명청구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다. **제69조 (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8조에 따른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기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 12. 30.]
제87조 (법정이율에 따른 가산지급) 사업시행자는 제85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제기한 행정소송이 각하·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판결일 또는 취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보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1. 재결이 있은 후 소송을 제기하였을 때에는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 2.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있은 후 소송을 제기하였을 때에는 그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 [전문개정 2011. 8. 4.]	—	—

법 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9. 8.] [법률 제21901호, 2026. 9. 8., 타법개정]	시 행 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11. 10.] [대통령령 제36804호, 2026. 11. 10.]	시 행 규 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 4. 9.] [국토교통부령 제1322호, 2024. 4. 9.]
제88조 (처분효력의 부정지) 제83조에 따른 이의의 신청이나 제85조에 따른 행정소송의 제기는 사업의 진행 및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 8. 4.]	—	—
제89조 (대집행) 판례 2 ①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처분으로 인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가 그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그로 하여금 그 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것이 현저히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대집행을 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대집행을 신청하거나 제2항에 따라 직접 대집행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	—

법 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9. 8.] [법률 제21901호, 2026. 9. 8., 타법개정]	시 행 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11. 10.] [대통령령 제36804호, 2026. 11. 10.]	시 행 규 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 4. 9.] [국토교통부령 제1322호, 2024. 4. 9.]
제89조의2 (이행강제금) 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제43조를 위반하여 토지 또는 물건을 인도하거나 이전하지 아니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고, 그 기한까지 토지 또는 물건을 인도하거나 이전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이행기한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토지나 물건의 인도 또는 이전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6. 6. 16.][시행일: 2026. 12. 17.] 제89조의2	—	—
제90조 (강제징수)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4조제2항에 따른 의무자가 그 비용을 내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8. 4.]	—	—

제8장 환매권

제91조 ~ 제92조 · 법률 2개 조문

법 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9. 8.] [법률 제21901호, 2026. 9. 8., 타법개정]

제91조 (환매권) 판례 1

① 공익사업의 폐지 · 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하 이 조에서 "취득일"이라 한다)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환매권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0년 이내에 그 토지에 대하여 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 <개정 2021. 8. 10.>

1. 사업의 폐지 · 변경으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관계 법률에 따라 사업이 폐지 · 변경된 날 또는 제24조에 따른 사업의 폐지 · 변경 고시가 있는 날
2.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사업완료일

②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토지의 전부를 해당 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환매권은 취득일부터 6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③ 제74조제1항에 따라 매수하거나 수용한 잔여지는 그 잔여지에 접한 일단의 토지가 필요 없게 된 경우가 아니면 환매할 수 없다.

④ 토지의 가격이 취득일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동된 경우 사업시행자와 환매권자는 환매금액에 대하여 서로 협의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그 금액의 증감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환매권은 「부동산등기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사업에 필요한

시 행 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11. 10.] [대통령령 제36804호, 2026. 11. 10.]

제48조 (환매금액의 협의요건)

법 제91조제4항에 따른 토지의 가격이 취득일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동된 경우는 환매권 행사 당시의 토지가격이 지급한 보상금에 환매 당시까지의 해당 사업과 관계없는 인근 유사토지의 지가변동률을 곱한 금액보다 높은 경우로 한다.

[전문개정 2013. 5. 28.]

제49조 (공익사업의 변경 통지)

① 법 제91조제6항 전단 및 후단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0. 11. 24.>

② 사업시행자는 법 제91조제6항에 따라 변경된 공익사업의 내용을 관보에 고시할 때에는 그 고시 내용을 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환매권자(이하 이 조에서 "환매권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환매권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주소 · 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제3항에 따른 공고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른 공고는 사업시행자가 공고할 서류를 해당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에게 송부하여 해당 시(행정시를 포함한다) · 군 또는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의 게시판에 14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 5. 28.]

시 행 규 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 4. 9.] [국토교통부령 제1322호, 2024. 4. 9.]

법 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9. 8.] [법률 제21901호, 2026. 9. 8., 타법개정]	시 행 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11. 10.] [대통령령 제36804호, 2026. 11. 10.]	시 행 규 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 4. 9.] [국토교통부령 제1322호, 2024. 4. 9.]
토지의 협의취득 또는 수용의 등기가 되었을 때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⑥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사업인정을 받아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협의취득하거나 수용한 후 해당 공익사업이 제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다른 공익사업(별표에 따른 사업이 제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변경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매권 행사기간은 관보에 해당 공익사업의 변경을 고시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이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공익사업이 변경된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9.> [전문개정 2011. 8. 4.][2021. 8. 10. 법률 제18386호에 의하여 2020. 11. 26.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 제1항을 개정함.]		
제92조 (환매권의 통지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9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매할 토지가 생겼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환매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과실 없이 환매권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② 환매권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공고를 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는 제91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환매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50조 (환매권의 공고)** 법 제92조제1항 단서에 따른 공고는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거나 해당 토지가 소재하는 시(행정시를 포함한다)·군 또는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의 게시판에 7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 5. 28.]	—

제9장 벌칙

제93조 ~ 제99조 · 법률 9개 조문

법 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9. 8.] [법률 제21901호, 2026. 9. 8., 타법개정]	시 행 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11. 10.] [대통령령 제36804호, 2026. 11. 10.]	시 행 규 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 4. 9.] [국토교통부령 제1322호, 2024. 4. 9.]
제93조 (벌칙)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상금을 지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2011. 8. 4.]	—	—
제93조의2 (벌칙) 제63조제3항을 위반하여 토지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제63조제4항에 따라 현금으로 보상받을 권리를 포함한다)를 전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20. 4. 7.]	—	—
제94조 삭제 <2007. 10. 17.>	—	—
제95조 (벌칙)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법인등이나 그 밖의 감정인으로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감정평가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4. 7.> [전문개정 2011. 8. 4.]	—	—

법 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9. 8.] [법률 제21901호, 2026. 9. 8., 타법개정]	시 행 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11. 10.] [대통령령 제36804호, 2026. 11. 10.]	시 행 규 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 4. 9.] [국토교통부령 제1322호, 2024. 4. 9.]
제95조의2 (벌칙) 판례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장해물 제거등을 한 자 **2.** 제43조를 위반하여 토지 또는 물건을 인도하거나 이전하지 아니한 자 [본조신설 2015. 1. 6.]	—	—
제96조 (벌칙) 제25조제1항 또는 제2항 전단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1. 8. 4.]	—	—
제97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31., 2020. 4. 7.> **1.** 제9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출입하게 한 사업시행자 **2.** 제11조(제2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사업시행자 또는 감정평가법인등의 행위를 방해한 토지점유자 **3.** 삭제 <2015. 1. 6.> **4.** 삭제 <2015. 1. 6.> [전문개정 2011. 8. 4.]	—	—

법 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9. 8.] [법률 제21901호, 2026. 9. 8., 타법개정]	시 행 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11. 10.] [대통령령 제36804호, 2026. 11. 10.]	시 행 규 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 4. 9.] [국토교통부령 제1322호, 2024. 4. 9.]
제98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3조, 제93조의2, 제95조, 제95조의2, 제96조 또는 제97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이나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1. 6., 2022. 2. 3.> [전문개정 2011. 8. 4.]	—	—
제99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 4. 7.> 1. 제58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이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자 2.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의견서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의견서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 3.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감정평가를 의뢰받거나 출석 또는 진술을 요구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감정평가법인등이나 그 밖의 감정인 4.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실지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 · 도지사가 부과 · 징수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8. 4.]	**제5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3. 5. 28.]	—

이 쪽은 양면 인쇄 · 제본을 위해 비워 두었습니다.

한국보상원은

항상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료 배포 안내

본 손실보상법률 3단 편람은 자유롭게 열람·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배포하실 때에는 출처((주)한국보상원)를 밝혀 주시고, 내용을 재편집하여 사용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본 책자는 (주)한국보상원이 자료를 선별·배열·요약한 편집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인쇄된 책자를 원하시면 회사로 문의해 주십시오.

책자 문의 1588-6836 · bosangwon@naver.com

CREDITS

PUBLISHER
윤경식 대표이사

EDITOR
윤경식 대표이사

DESIGN
윤진원

DATA COLLECTION
박현우 과장, 한유진 팀장,
조광범 상무, 김민수 전무

PROJECT DIRECTOR
윤경식 대표이사

PUBLISHED BY
(주) 한국보상원

PUBLICATION DATE
2026. 11.

SOURCE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률·시행령·시행규칙 현행 원문·
대법원 판례

(주) 한국보상원

KOREA COMPENSATION BOARD CO.,LTD

손실보상 · 사업부지 확보 전문

2008년 이후 18년 · 누적계약 217개 사업장 · 손실보상 업무완료 184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서로 30, KNN타워 16층 · 1588-6836 · www.bosangwon.com

이 책자는 무료로 배포합니다. 배포 시 출처를 표시해 주시고, 재편집해 사용할 수 없습니다.